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미 FTA 협정이 대미 섬유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교역성과 및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USA FTA on the
Export of Textiles and Apparel to USA
- Focused on Trade Performance & Analysis of Agreement -

The logo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P' and 'K' intertwined in the center, with the university's name in English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round the top half and in Korean '부경대학교' around the bottom half. The date '2015년 2월' is printed in the center of the logo.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FTA비즈니스 전공

이 석 동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미 FTA 협정이 대미 섬유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교역성과 및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USA FTA on the
Export of Textiles and Apparel to USA

- Focused on Trade Performance & Analysis of Agreement -



지도교수 윤 광 운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FTA비즈니스 전공

이 석 동

이석동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경제학박사 김기수



위원 지리학박사 이정윤



위원 경영학박사 윤광운



< 목 차 >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
ABSTRACT	v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3 절 연구의 구성	4
제 4 절 선행 연구	7
제 2 장 대미 섬유류 수출현황 분석	9
제 1 절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9
1.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9
2. 우리나라 섬유산업 통계	13
제 2 절 대미(對美) 섬유류 수출현황	19
1. 한미 FTA 섬유류 협정을 적용받는 물품	19
2. 대미 섬유류 수출현황	21
제 3 절 한미 FTA 교역성과 분석	23
1. 한미 FTA 관세양허안	23
2. 한미 FTA 교역성과	24
3. 주요 경쟁국가와 수출실적 비교	26
4. 산업별 대미 수출실적 분석	27
제 3 장 한미 FTA 섬유류 협정문 분석	30
제 1 절 원산지제도 일반 체계	30

1. 원산지증명서의 유통	30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31
3. 협정별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비교	32
제 2 절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검증제도	33
1. 원산지결정기준	33
2. 원산지결정기준 특례규정	37
3.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	41
제 3 절 한미 FTA 섬유류 협정문 분석	53
1. 한미 FTA 협정문 구성	53
2. 미국의 섬유류 협상 배경	54
3. 섬유류 원산지결정기준	59
4. 양자 긴급조치	66
5. 섬유류 생산기업 정보제공	67
6.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70
7. 섬유류 최소 허용수준	71
8.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72
제 4 장 문제점 및 대응방안	73
제 1 절 FTA 특혜관세 활용 섬유류 수출 저조	73
1. 대미 섬유류 FTA 활용률 분석	73
2. 섬유류 수출저조 원인 분석	75
3. FTA 특혜수출 향상 방안	77
제 2 절 섬유류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문제점	82
1. 생산기업 정보제공 검토	82
2. 유사사례 연구	82
3. 대응방안	83
제 3 절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문제	84

1. 역외가공 실효성 검토	84
2. 남북교역 중단 이전 교역실태 분석	85
3. 대응방안	86
제 4 절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문제	86
1. 적용 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	86
2. 공급부족 원료 접수사례	87
3. 대응방안	88
제 5 장 결 론	89
제 1 절 시사점	89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0
1. 연구의 한계	90
2. 향후 과제	90
참고문헌	93

< 표 목 차 >

<표 2-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7
<표 2-2> 우리나라 전체 FTA 교역 비중	10
<표 2-3> 우리나라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 비율	12
<표 2-4> 우리나라 기업 규모별 FTA 수출 활용	13
<표 2-5> 세계 주요 섬유 생산추이	14
<표 2-6> 세계 주요 국가별 섬유류 수출 현황	15
<표 2-7> 세계 주요 국가별 섬유류 수입 현황	16
<표 2-8> 우리나라 섬유산업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16
<표 2-9> 우리나라 섬유류 품목별 수출입 현황	17
<표 2-10> 2013년도 섬유류 특혜수출입 현황	18
<표 2-11> '14 상반기 섬유류 협정별 특혜 수출실적	18
<표 2-12> 섬유류 HS 분류 체계	19
<표 2-13> 한미 FTA 섬유류 협정 적용을 받는 물품	20
<표 2-14> HS 제50류~제63류 대미 섬유류 수출 현황	22
<표 2-15> 한미 양국간 관세양허 수준	23
<표 2-16> 대미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 일정	24
<표 2-17>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현황	25
<표 2-18> FTA 혜택별 대미 수출 현황	25
<표 2-19> 한미 FTA 이후 주요국가의 대미 수출 비교	26
<표 2-20> 발효 연차별 대미 수출 증가율	27
<표 2-21> 산업별 FTA 특혜 대미 수출 현황	29
<표 3-1>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30
<표 3-2> 한미 FTA 원산지증명 방법	31
<표 3-3>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C/O) 명칭	32
<표 3-4> FTA 원산지결정기준	34

<표 3-5> 누적조항을 활용한 실무 사례	39
<표 3-6> 미국 세관당국의 FTA 검증 원칙	43
<표 3-7>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검증 방법	47
<표 3-8> 한미 FTA 협정문 전문 구성	53
<표 3-9> 한미 FTA 협정문 제4장 구성	54
<표 3-10> 미국 관세양허표 예시	56
<표 3-11> FTA협정별 섬유류 원산지기준 비교	60
<표 3-12> 섬유류 품목별 원산지기준 해석방법	61
<표 3-13> 한국 측이 요청한 원사기준 예외 품목	64
<표 3-14> FTA 협정별 섬유류 불인정 공정	65
<표 4-1> 대미 섬유제품의 수출실적과 FTA활용 현황	74
<표 4-2> 대미 수출액 상위 20개 섬유제품과 활용 비중	76
<표 4-3> 산업용 부직포의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77
<표 4-4> 주요 산업용 섬유의 HS분류	78
<표 4-5>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80
<표 4-6> 미국이 체결한 FTA협정	82
<표 4-7> 남북교역 중단 이전 교역실태	85

< 그림 목 차 >

<그림 1> 연구 흐름도	6
<그림 2>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 흐름도	44
<그림 3>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검증 도해	52
<그림 4> 제11부 부속서 및 규칙 체계도	62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USA FTA on the Export of Textiles and Apparel to USA - Focused on Trade Performance & Analysis of Agreement -

Lee, Suk-do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Logist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 world is competitively incorporated in the new world trade order, called "FTA". Aiming at the hub of FTA, Korea entered into FTA agreement with EU in 2011 and USA in 2012, which can be explained as unavoidable step to enjoy the preemption effect.

Facts this paper is trying to demonstrate are that the textiles and apparels in Korea-USA FTA agreement are not "the beneficiary items" and that there are heavy obligations imposed on exporters and so that it is difficult to operate "various systems" in the agreement. Analysis of the trade performance between two countries in two years before and after that FTA agreement show that the fabrics are not the beneficiary items. Unlik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roblems of various system.

The first problem is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fabric production facility of our country. Out of all countries with whom the United States made FTA agreement, Korea ranks the second,

after Singapore, for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each person engaged in the production textile & apparel goods. Regarding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either extend or abolish the period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through the committee on Textile and Apparel Trade Matters that both countries agreed to establish and to review the pending issues about textile and apparel.

Secondly, there is a problem in securing the exceptional quantity of materials to mend for insufficient raw materials of textile.

For the last three years after the agreement, there hasn't been any discussion about the exceptional materials for insufficient raw materials of textiles from HS 50 to 60 and HS from 61 to 62, even though they agreed to provide for 5 years within annual limit of 100 million SME. The inconsistency was due to complicated domestic situation of each country after the FTA agreement.

Thirdly, there is a problem in permitting the outward processing in Korean peninsula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agreement, there is a saving clause to discuss outward processing again within 1 year after FTA agreement, but it will be established only after considering the denuclearization progress of North Korea, environment of the outward processing, labor and management conditions, and other situ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However, in this case, Korea has to follow the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leading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even if this is allowed, there are some tasks in proceeding to obtain legislative approval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by both countries) for the agreement. It seems like this system was selected to finish the FTA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ster, and it would be hard to gain the approval due to several conditions such as problems of human rights, denuclearization progress etc.

FTA is just a way to get incorporated in the new world economy order, not the solution. Even in the global FTA era, it is still important to have the competitiveness in exports, managing price, quality, design and the supply chain management to reduce the logistics costs. The implication in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avoid illogical agreement like Korea-USA FTA textile agreement in the future. Finally, this paper intends to emphasize that FTA begins with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etween both parties, unlike WTO bounded tariffs that operates on the principle of 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nd so that the economic benefits are available only when preemption effects are provided.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의복을 조달하는 기초산업으로 출발한 섬유산업은 인류생활의 오랜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emancipation of slaves)을 선언하기 이전 미국의 목화(면화)생산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남부에서는 노예의 수요가 급증하고 면공업(綿工業)이 발전하였다. 18세기 중엽 영국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역시 처음에는 면공업에서 일어나 점차 석탄·철광·기계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끈 선도 산업 중의 하나이기도 한 섬유산업은 오늘날에 와서는 의복 조달에 한정하지 않고, 첨단 기능성 소재를 이용하여 기계 부품, 건축용 단열재, 가구, 각종 가정용품, 위생용품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섬유 및 관련 산업은 인류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주요 선진국들의 전통산업으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강대국들은 자동차, 항공기, 첨단기계 및 반도체의 상업적 이용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계속하면서도 그들의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 장벽을 두어 왔다.

섬유류 제품이 2005년도부터 WTO(1995) 일반원칙을 적용받아 수입규제(쿼터)가 철폐될 때 까지 그 이전에는 GATT체제하에서 미국, EU 등 섬유수입 선진국을 중심으로 단기면직물협정(1961)(STA : 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과 장기면직물협정(1962~1973)(LTA : Long-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이 존속하였으며, 1974년 이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체결한 MFA¹⁾협정이 1991년도까지 세계 섬유시장의 질서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개도국

1)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 : 섬유류 수입국가에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수출 개도국 간 1974년에 체결된 협정

과의 임금격차 확대,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섬유제품의 비교우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통산업 보호와 실업문제 악화 등을 이유로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WTO에서 정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창설에 관련된 주요 원칙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나와 있다. 먼저, GATT 제24조(Article XXIV : Territorial Application--Frontier Traffic--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 제5항(b)에서 FTA의 대외적 성립요건으로 FTA 체결 이후 역외국(비회원국)에 대한 '실행 관세 및 제한적 교역 규제(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가 그 이전보다 더 제한적이면 안 된다²⁾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항(b)에서는 FTA 대내적 성립요건으로 역내국간에는 '실질적인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을 대상으로 '관세장벽 및 제한적 교역규제'가 철폐되어야 하며³⁾, 이러한 철폐는 합리적인 기간(통상 10년)내에 이루어 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 모든 무역'과 관련하여 WTO 입장에서 유권해석이나 구속적인 권고(recommendation)를 내린 적은 없으나, 다수 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10~20%정도를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⁴⁾, 실제 최근에 체결된 FTA의 경우도 자국의 민감 산업 보호를 위하여 이와 비슷한 양허제한 품목을 두고 있다.

한미 FTA체결 이후 섬유산업은 FTA체결의 중요한 수혜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양국 간 섬유류 제품의 교역성과를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섬유산업이 입은 혜택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섬유산업 발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하고 판단된다.

2) GATT 제24조 제5항 : such agreement 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

3) GATT 제24조 제8항 :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except, where necessary, those permitted under Articles 11, 12, 13, 14, 15, 20)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4) 기획재정부(2012), FTA이해 pp.161~169(원출처 : FTA협정과 FTA와의 관계, 최원목)

문제는 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서는 자국의 민감 산업 보호 명분으로 수출당국과 수출자에게 너무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섬유류 분야에서 대표적인 불합리 조항은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 섬유·의류 생산기업에 대한 일방적 정보제공,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예외물량) 및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추가논의 절차 복잡, 공동검증 시 수입국 참관 의무화, 수출자 서면조사 시 원재료 공급자와 공정수행자의 M/A(제조자진술서) 제출 등 의무사항 강조이다. 섬유류 협정에 이러한 규제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관세율할당)를 도입하거나 관세화를 통한 제한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인다. 한미 FTA 섬유류 협정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할 선례로 생각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지금 세계는 FTA를 축으로 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 상호간, 개도국 상호간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확대로 종전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구도가 자유무역주의 구도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정 상품교역 분야 가운데 섬유 및 의류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미 FTA에 있어 섬유 및 의류 분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모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FTA 협정에 비해 특히 까다롭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혜품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섬유생산기업에 대한 미국 측 정보제공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섬유류 원산지기준 예외물량) 확보, 한반도 역외가공 허용 등 협정문상 「각종 제도」가 여건상 실제로 운용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WTO · UN 등 국제기구 사이트 정보 및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발간 자료와 학위논문, 학술지, 인터넷 자료를 통한 기초 통계량 분석 및 문헌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섬유류 수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나아가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법, 섬유류 생산기업 정보제공,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및 한반도 역외가공 허용 논의 지연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섬유 생산기업 정보제공은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자 의무사항으로 섬유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협정문에서 규정한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논문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언급하였다.

제2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FTA 원산지 관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세계 주요 섬유 생산추이, 세계 섬유류 국가별 수출입 순위,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입 실적 및 우리나라 섬유류의 FTA 특혜 수출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2.3.5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교역성과와 대미 섬유류 수출 현황을 분석, 주요 품목별 수출변화 추이를 통계수치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제3장은 FTA 원산지제도 일반 체계, 원산지결정기준 및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분야 협정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을 다루었다. 섬유류 협정문 분석에 있어서는 먼저 불합리한 한미 섬유류 협정의 미국 측 협상 배경을 검토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 방법, 섬유류 생산기업 정보제공, 공급부족 원료에 대한 역외조달 허용 및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치 등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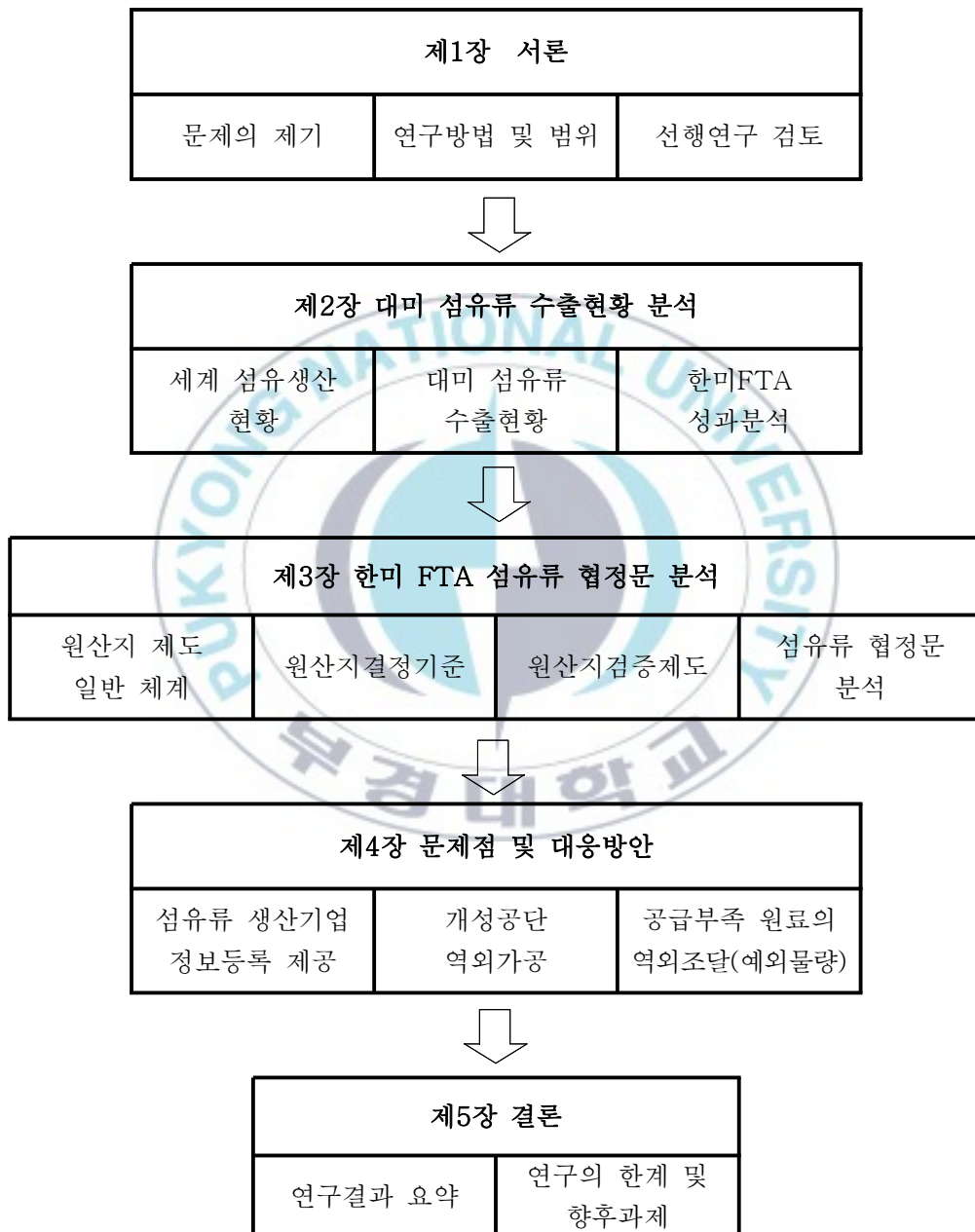
특히, 한미 FTA 섬유 및 의류제품과 같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특례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제4장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한미 FTA 섬유류 협정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대미 섬유류 수출 저조, 섬유류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논의 지연 및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예외물량) 미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즉, 미국 측 민감 품목인 섬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관협력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각종 제도의 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협정문 틀 안에서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향후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구성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제4절 선행 연구

정원교(2007년도)에 따르면⁵⁾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1989)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한미 FTA 발효 ‘수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저 자	사용된 모델	주요 결과
김우택(1986)	Armington모형 (부분균형)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18.25% 증가하고, 수입이 12.93% 증가함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 10억 달러 개선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1989)	무역특화지수, 산업의존도 등 산업지수를 주 로 활용	-산업별 분석 -한국측 유리품목(의류, 철강, 금속제품, 섬유, 여행용구), 미국 측 유리품목(농업, 화공, 전기기계, 기계류), 득실판단 어려운 분야(통신기기, 승용차, 컴퓨터, 산업용 일반 기계)
왕윤중 / 정인교 (1998)	다국가, 다부문 CGE모형	-한국의 GDP가 0.36%, 후생수준이 215억 달러 개선 -농업부문의 제외는 한국의 후생수준을 악화
Choi-Schott (2001)	다국가, 다부문 CGE모형 ⁶⁾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각각 109억 달러, 89억 달러의 후생개선 효과 기대 -한국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을 각각 30.3%, 499.4% 증가시킬 수 있음
USITC (2001)	다국가, 다부문 CGE모형	-한국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100억 달러), 54%(190억 달러)가 증가되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90억 달러 악화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 강문성, 2004)	중력모형	-100억 달러 이상의 대미국 및 대세계 무역 수지 개선(대미 수출증가액 353~462억 달러, 대미 수입증가액 172~293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전망(216억~319억 달러)
정인교(2005)	다국가, 다부문 CGE모형	-한국 GDP 0.42~2.03% 증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정 모형의 설정 및 파라미터가 중요 할 수 있음을 강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다국가, 다부문 CGE모형	-한국 GDP 0.42~1.99% 증가, 후생수준 0.61~

5) 정인교외1(2007), FTA원산지기준의 과급영향 분석, 국내 학술지

6)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분석

한국섬유개발원 외⁷⁾(2007)에 따르면 섬유류의 높은 관세율 철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미 FTA기대효과 중에서 섬유산업이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섬유류에 대한 관세율은 완제품에 가까울수록 고관세를 유지하는 경사관세 구조이며, 단순평균 관세율은 8.9%이나 2005년 말 기준으로 한국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12.51%이며, 이 가운데 직물류 가중평균 관세율은 9.56%, 의류제품 가중평균 관세율은 16.4%로 추정하고 있다.(산업연구원) 품목별로는 의류의 가중평균 관세율이 16.4%로 가장 높은 점을 감안 가중 높은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근거로 관세철폐 기간을 고려한 발효 1차년도 대미 수출 섬유류의 관세인하 효과를 약 2억 9천만 달러로 전망하였다.⁸⁾

성윤갑(2007)⁹⁾에 따르면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유망 품목으로 섬유제품을 들고 있다. 2010년도 Kotra 구미팀의 자체조사 보고서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大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에서도 섬유류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이 앞선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호준(2013)¹⁰⁾에 따르면 한미 FTA체결 이후 자동차와 함께 섬유류 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수혜산업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 섬유·의류 분야에서 미국 측 양허수준의 즉시 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으로 61%, 품목수로는 87%에 이르고, 특히 스웨터(미국 관세율 32%), 양말(미국 관세율 13.5%), 화섬 남성바지(미국 관세율 28.2%)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상당수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산업연구원의 보고를 인용하여 연평균 수출 227백만 달러 증가와 수입 19백만 달러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관세 철폐만 염두에 두고, 섬유류에 대한 사실상의 비관세장벽(NTB) 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2년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른 수출 주력품목에 비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미국에 대한 섬유류 수출은 미국 내수경기, 환율정책, 원자재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섬유 분야 협정문 전반을 고찰해 볼 때 앞으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전망하는 만큼의 대미 섬유류 수출증가는 힘들어 보인다. 최근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미국이 큰 견해차를 보이는 부분도 섬유 분야라고 한다.

7) 섬유·의류 원산지 확인 및 심사관리의 적정화 방안 연구(2007), 한국섬유개발원&경북대학교 pp. 230~233

8) 상계서, p. 230

9) 성윤갑(2007), FTA 원산지해설P.33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0) 이호준(2013),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관한 연구, pp.2~3, p.36, 석사학위 논문

제2장 대미 섬유류 수출현황 분석

제1절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1.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1.1 FTA 교역비중의 확대

FTA를 체결하는 기본목적은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소비자 후생증진 등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WTO체제 출범 이후 DDA협상¹¹⁾ 교착 상태로 인한 다자주의 관세인하 달성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주의 확산이 가속화되어 자국의 무역시장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블록화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2년 EU 출범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FTA, EPA, CEPA 등 여러 형태로 세계 지역주의 구도가 본격화되어 FTA 도미노(1993, Baldwin)시대를 열었다.

WTO 보고서(2014)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여 380개 정도의 지역무역협정(RTAs)이 발효되어 있고, 그 비중이 세계 교역량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도 4월 기준으로 48개 국가와 9개 FTA 협정을 발효시켜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 편입에 노력하고 있다.¹²⁾

그러나,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불리는 협정마다 다른 복잡한 원산지기준과 직송원칙, 역내가공원칙 준수 및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업이 전적으로 FTA 혜택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FTA 체결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¹³⁾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시장 선점(preemption)이

11) DDA는 2001년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 합의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관세율 추가인하 등 분야별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미국·EU·중국 등 회원국들 간 역학구도가 복잡해져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 WTO 세계무역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1년 명목GDP 1조 1,635억불로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진입하였고, 또 2011~2013년도 까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규모로는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최종재 수출금액기준 방식 대신 국내 부가가치기준(TiVA) 무역통계 측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3) FTA 효과에 관해 처음으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미경제학자 바이너(Jacob Viner, 1950)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WTO체제¹⁴⁾ 하의 1품목 1세율 구조는 수입물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단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을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FTA체제 하의 1품목 多세율 구조는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기준과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정확한 특혜관세 적용 여부는 원산지 사후검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자유무역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서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반덤핑(Anti Dumping),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긴급관세(Safeguard)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WTO에서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2-2> 우리나라 전체 FTA 교역 비중

(교역비중 : %, 2013년도 기준)

구분	발효(47개국)	협상타결(3개국)	협상 중(15개국)	여건조성(19개국)
상대국가	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RCEP ¹⁵⁾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교역비중	36.0	3.9	30.4	14.8
누적비중	36.0	39.9	70.3	85.1

출처 : 월간 관세(2014.8), First Class Customs Service, YES FTA, 이명구

연구자 주: ‘13년도 기준, 對FTA 발효국 교역 3,872억불/對세계 교역 10,752억불=36.0%

FTA체결로 자국 생산품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체약국 상품을 수입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역창출 효과’와 비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특정상품을 관세가 인하된 체약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를 들어 설명하였다.(Jacob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1950) 그러나, FTA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는 인위적으로 비교우위를 무력화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2011.11.7 캠프리지大 장하준 교수, CBS인터뷰)

14) WTO는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1월에 발족되어 2년마다 회원국 전체 각료회의를 열어 상호 통상 문제를 협의한다. 2013.3.2 현재 WTO 회원국은 159개국이다.

15) RCEP은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FTA협정으로 대상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다. 최근 중국은 TPP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다.

1.2 FTA 원산지 관리

1.2.1 개요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자가 상대국 수입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 FTA 원산지 관리란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 근거, 원산지증명서(C/O) 발행, 영역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과 직송원칙(direct transport) 준수 등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자료를 관리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틀어서 말한다. 모든 FTA협정에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부재나 오류에 대한 금전적 손실은 무역계약서상 클레임 조항을 활용하여 보상받는 방법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 동안에는 수입자가 사후 추징에 의한 잠재적 손실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다. 협정문에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수출자가 생산한 제품이 협정문에서 정한 HS 6단위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원산소명서(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에 제조공정도(manufacture process)와 자재명세서(BOM)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수출자가 자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서류 이외에 완제품 공급자로부터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를 추가로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자재 구매 증빙서류는 당해 원자재가 원산지(KR) 제품인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원산지가 미상이거나 비원산지 자재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사본을 받아서 제출한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국가는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페루(2016.8부터 자율발급)이고, 협상이 완료된 중국도 기관발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율발급 방식인 경우에는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하는 점은 모두 동일하나 협정별로 다소 차이점이 있다.

FTA 원산지증명(proofs of origin)의 검증(verification)에 대비한 관련서류 보관 기간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협정에서 일률적으로 5년(아세안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13년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은 평균 66.9%로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수치이다. FTA별로는 EU(80.8%), 미국(76.1%) 등과의 FTA는 높은 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7%), 인도(42.9%) 등 국가에서는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표 2-3> 우리나라의 FTA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단위 : %)

FTA상대국 (발효순)	수 출(A)		수 입(B)		증감폭(B-A)	
	‘12년	‘13년	‘12년	‘13년	수출	수입
칠레	75.2	78.8	97.9	98.5	3.6	0.6
EFTA	79.8	80.0	61.9	41.4	0.2	-20.5
ASEAN	37.7	38.7	73.8	75.6	1.0	1.8
인도	36.2	42.9	52.7	61.0	6.7	8.3
EU	81.4	80.8	66.8	67.8	-0.6	1.0
페루	78.0	91.8	92.0	97.9	13.8	5.9
미국	68.9	76.1	61.0	67.3	7.2	6.3
터키	-	70.0	-	69.0	-	-
FTA 전체	62.7	66.9	67.0	69.0	4.2	2.0

주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고 수출 / FTA혜택품목의 수출

출처 : 관세청('14.2.25, 보도자료), '2013년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 재구성

1.2.2 원산지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관세청 규제영향분석서(2012)에 따르면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¹⁶⁾'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기업의 준비 비용은 2012년 6월 현재 인증기업 수 4,944개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74억 천만 원에서 최대 84억 원(업체당 149만원~169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관세당국의 인증심사 비용은 최소 28억 4천만 원에서 최대 48억 8천만 원(업체당 57만원~98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¹⁷⁾

16) EU지역으로 일시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자의 의무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생산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수출 관세당국으로부터 미리 받는 절차이다.

17) 김진섭(2012), 관세사의 FTA 컨설팅 업무 활성화 방안, 관세학회지 제14권 제2호('12.12.21)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보전의 일환으로 업체에서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1,0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에 따라 2013.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2014.1.1일자 법률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영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FTA 특혜수출활용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된다.

아래 표는 2013년도 기업 규모별 활용률이다. 도표 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영세)기업은 전문 인력부족, 자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원산지관리를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FTA는 피해갈 수 없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흐름으로 수출기업 스스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거나 채용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를 투자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표 2-4>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FTA 수출 활용률

연 도		2012	2013
한미 FTA 활용률(%)	대기업	74.8	84.1
	중소, 중견	59.4	69.2
한EU FTA 활용률(%)	대기업	85.1	84.3
	중소, 중견	73.5	76.3

주 :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 중소기업은 그 외의 기업으로 분류

출처 : 관세청('14.2.25, 보도자료), 2013년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

2. 우리나라 섬유산업 통계

2.1 세계 주요섬유 생산 추이

2013년 세계 섬유생산량은 전년대비 2.3%증가한 8,449만 톤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화학섬유는 5,271만 톤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천연섬유는 2,688만 톤으로 전년대비 4.4%감소하였다.

2011~2013년간 전체적으로 화학섬유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천연섬유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천연섬유는 낮은 생산성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보여지며, 화학섬유의 생산 증가는 산업용 섬유생산 확대와 다양한 기능성 소재개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세계 주요섬유 생산 추이

(중량기준 단위 : 천톤, %)

년도	화학섬유			천연섬유				합계
	합섬	셀룰로오스	계	면	양모	견	계	
2011	46,659 (5.6)	3,641 (12.6)	50,300 (6.0)	27,284 (9.7)	1,117 (-0.9)	132 (-5.7)	28,533 (9.2)	78,834 (7.1)
2012	50,116 (7.4)	4,330 (18.9)	54,446 (8.2)	26,880 (-1.5)	1,111 (-0.5)	134 (1.5)	28,125 (-1.4)	82,570 (4.7)
2013(p)	52,706 (5.2)	4,909 (13.4)	57,615 (5.8)	25,640 (-4.6)	1,104 (-0.6)	135 (0.7)	26,879 (-4.4)	84,494 (2.3)
구성비	62.4	5.8	68.2	30.3	1.3	0.2	31.8	100

출처 : 한국화섬협회, <http://www.kcfa.or.kr/>

- (주) 1. 셀룰로오스에는 Cupra포함하며 Acetate Tow는 제외, 합섬에는 Olefin제외
2. ()는 전년대비 증감률 ※ 셀룰로오스=비스코스레이온, 인견, 재생섬유

2.2 세계 섬유류 수출입 순위

2.2.1 세계 섬유류 수출 순위

201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은 139억불(세계 8위)로 전 세계 섬유류 수출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섬유류 가운데 섬유는 120억불(세계 5위)로 4.2%, 의류는 19억불(세계 20위)로 0.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별 섬유류 수출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6> 세계 주요 국가별 섬유류 수출 현황('12년)

(단위 : 억불, %)

구분	세계	1	2	3	4	5	6	7	8	9	10
		중국	EU	인도	터키	방글라 데시	미국	베트남	한국	파키 스탄	인니
전체	7,084	2,883	1,783	291	253	216	191	182	139	129	121
비중	100	40.7	25.2	4.1	3.6	3.0	2.7	2.6	2.0	1.8	1.7
섬유	2,857	1,060	694	153	111	16	135	41	120	87	45
비중	100	37.1	24.3	5.3	3.9	0.6	4.7	1.4	4.2	3.0	1.6
의류	4,227	1,823	1,089	138	143	199	56	141	19	42	75
비중	100	43.1	25.8	3.3	3.4	4.7	1.3	3.3	0.5	1.0	1.8

주: EU는 역내교역 포함, 중국은 마카오 포함 수치임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원출처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2.2.2 세계 섬유류 수입 순위

201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입은 111억불(세계 7위)로 전세계 섬유류 수입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섬유류 가운데 섬유는 49억불(세계 10위)로 1.6%, 의류는 63억불(세계 7위)로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 수입보다 의류 완제품 수입 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 높은 임금구조와 낮은 부가가치 때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로부터 의류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주요 국가별 섬유류 수입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7> 세계 주요 국가별 섬유류 수입 현황('12년)

(단위 : 억불, %)

구분	세계	1	2	3	4	5	6	7	8	9	10
		EU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한국	베트남	터키	멕시코
전체	7,441	2,442	1,139	515	430	140	139	111	98	91	90
비중	100	32.8	15.3	6.9	5.8	1.9	1.9	1.5	1.3	1.2	1.2
섬유	3,023	741	260	302	90	46	47	49	92	64	60
비중	100	24.5	8.6	10.0	3.0	1.5	1.5	1.6	3.0	2.1	2.0
의류	4,418	1,701	880	213	339	94	92	63	6	27	30
비중	100	38.5	19.9	4.8	7.7	2.1	2.1	1.4	0.1	0.6	0.7

주: EU는 역내교역 포함, 중국은 마카오 포함 수치임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원출처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2.3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입 실적

2.3.1 섬유산업 사업체수/종사자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8> 우리나라 섬유산업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천명, 전년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천명	증감률	비중
사업체수 (개)	제조업	320,053	320,374	326,813	340,909	360,394	5.7	-
	섬유산업	42,770	42,265	42,156	43,713	45,200	3.4	100
	비중%	13.4	13.2	12.9	12.8	12.5	-	-
종사자수 (천명)	제조업	3,277	3,269	3,417	3,587	3,715	3.6	-
	섬유산업	294	288	287	298	304	2.0	100
	비중%	9.0	8.8	8.4	8.3	8.2	-	-

주 : 도소매,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은 제외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4), 2014 섬유산업통계 자료

2.3.2 섬유류 전체 수출입 실적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은 2.3% 증가한 159.5억불, 수입은 12.8% 증가한 135.2억불, 섬유류 무역수지는 24.3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전체 산업가운데 섬유류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를 보이고 있다.

<표 2-9> 2013년도 우리나라 섬유류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섬유원료	1,434	4.3	233	△12.0	1,201
섬 유 사	1,723	△1.8	2,130	8.9	△407
섬유직물	9,369	0.8	1,791	1.3	7,579
섬유제품	3,428	8.0	9,367	17.1	△5,939
섬유류(A)	15,955	2.3	13,520	12.8	2,434
비중(A/B)	2.9	-	2.6	-	5.5
전체 수출(B)	559,632	2.1	515,586	△0.8	44,047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4), 2014 섬유산업통계 자료

2.3.3 FTA 특혜수출 비중 분석

2013년도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섬유류 전체 수출금액 가운데 FTA 특혜관세 적용 수출 비중은 약 15.5%에 불과하여 일반(비특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84.5%보다 훨씬 낮다. 또, 2014 상반기 FTA특혜 수출실적을 보면 섬유류의 경우 일반(비특혜)수출이 91%(24,741백만달러), FTA특혜수출이 9%(2,518백만달러)를 차지하여 전년 보다 전체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특혜수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협정의 교역비중이 36%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협정별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로운 미국, EU 등 국가는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세안, 인도는 전년보다 약 5배 정도 급증하고 있다.

<표 2-10> 2013 섬유류 특혜 수출입 현황

(단위 : 만달러, %)

FTA 특혜 수출 (15.5%)								일반 수출 (84.5%)	총 계
EU	미국	아세안	페루	칠레	EFTA	인도	합계	1,348,552	1,595,815
126,305	93,353	21,558	1,083	3,745	653	566	247,263		
51.1%	37.8%	8.7%	0.4%	1.5%	0.3%	0.2%	100%		

FTA 특혜 수입 (34.1%)								일반 수입 (65.9%)	총 계
EU	미국	아세안	페루	칠레	EFTA	인도	합계	890,144	1,351,357
70,748	22,494	351,926	637	1	1,464	13,943	461,213		
15.4%	4.9%	76.3%	0.1%	0.0%	0.3%	3.0%	100%		

출처 : FTA TRADE REPORT Vol.01 April 2014(2014),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p.86~87재구성

<표 2-11> 2014 상반기(1~6월) 섬유류 협정별 특혜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

협정별	수출금액(%)	구성비(%)
ASEAN	1,158,622	46.0
E U	679,796	27.0
미국	490,752	19.5
터기	135,171	5.4
인도	23,948	0.9
칠레	15,607	0.6
페루	9,198	0.4
EFTA	5,225	0.2
합 계	2,518,319	100

※ FTA특혜수출 2,518,319(9%) + 일반수출 24,741,481(91%) = 총계 27,259,800 천달러

출처 : FTA TRADE REPORT Vol.07 October 2014(2014),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p.192

제2절 대미(對美) 섬유류 수출 현황

1. 한미 FTA 섬유류 협정을 적용 받는 물품

관세율표상 일반적인 섬유류 범위는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를 지칭하나, 한미 FTA 섬유류협정 적용을 받는 상품의 범위는 관세율표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이외에 제4202호의 직물제 여행 가방류, 제7019호의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 제9409.90호의 침구류이다.

WTO, 미국 CBP, 우리나라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화섬협회 등 공표 기관에 따라 통계 수치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섬유류의 범위¹⁸⁾와 수출신고 시점, 선적 시점, 도착시점, 상대국 수입신고 시점 등 통계작성 기준시점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⁹⁾

가공공정을 기준으로 관세율표 제11부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누면 아래 <표 2-12>과 같다.

<표 2-12> 섬유류의 HS 분류 체계

(제50류~제55류)	방직용 섬유 재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해당 물품은 가공도에 따라 섬유→사→직물의 순으로 다시 세분류된다.
(제56류~제59류)	여기에는 제56류의 워딩·펠트·부직포, 제57류 양탄자, 제58류 특수직물, 제59류 도포직물 등이 분류된다.
(제60류)	경사·위사가 없는 편물이 분류된다.
(제61류~제63류)	제61류에는 편물제 의류(ex.메리야스), 제62류에는 편물제 이외(직물제) 의류, 제63류에는 기타 섬유 제품이 분류된다.

출처 : 관세율표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18) 일반적으로 HS 품목분류(상품학)에서 섬유류라 함은 HS 제50류~제63류까지를 말한다.

19) 수출통계 기준 : 우리나라 관세청은 수출신고수리 기준, 미국 USITC(미국국제무역 위원회)는 수입신고 기준으로 집계 추정. 선적 의무기간 30일, 운송기간 약 30일, 미국 수입신고 의무기간 25일을 모두 합하면 최대 약 85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13> 한미 FTA 섬유류 협정 적용을 받는 물품

품목번호		품 명
가방류	제4202.12호	트렁크, 슈트케이스(suit case), 화장품케이스(vanity case), 서류가방(brief case), 학생가방 등 이와 유사한 용기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제4202.22호	핸드백(멜빵 여부를 불문, 손잡이가 없는 것 포함)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제4202.32호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제4202.92호	기타 가방류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섬유 사 직물	제50류	견(silk)
	제51류	모(wool), 섬수모 또는 조수모 ;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제52류	면(cotton)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의 지사(paper yarn) 및 지사의 직물
	제54류	인조 필라멘트(man-made filaments),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 및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인조 스테이플 섬유(man-made staple fibers)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직물	제56류	워딩(wadding), 펠트(felt) 및 부직포(nonwovens), 특수사(special yarns), 끈(twine), 코디지(cordage), 로프(ropes) 및 케이블(cables)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양탄자류(carpet)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tufted textile fabrics), 레이스(lace), 태피스트리(tapestries ²⁰), 트리밍과 자수포
	제59류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impregnates, coated, covered or laminated)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편물 편물의류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knitted or crocheted fabrics)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것)
직물 의류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의 것 제외)
기타 섬유제품	제63류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냅마(rags) ex)모포, 베드린넨(bed linen), 타올, 커튼, 텐트 등
유리섬유	제7019호	유리섬유(glass fibers) 및 이들의 제품
잡품	제9404.90호	침구(articles of bedding)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출처 : 관세율표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2. 대미 섬유류 수출 현황

먼저, 한미 FTA 발효(2012.3.15) 전후 관세청 통계를 기준으로 대미 섬유류 수출 실적을 비교해 보면, 발효 전 2년간 총 수출실적은 247,862만 달러, 발효 후 2년간 총 수출실적은 272,118만 달러로 평균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발효 후 2년간 대미 섬유류(HS 제50류~제63류 기준) 수출실적 272,118만 달러를 2007년도~2008년도 수출실적 310,147만 달러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12.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표 2-14>에서 보듯이 HS 제54류 인조 필라멘트 섬유, 제55류 인조 스테이플 섬유, 제56류 부직포 및 제59류 도포직물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도~2008년도 호황기 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HS 제61류 편물제 의류와 HS 제62류 직물제 의류 수출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섬유수출 호황기 때인 2007년도~2008년도와 한미 FTA발효 이후 2012년도~2013년도 2년간 의류 수출실적을 비교해 보면 HS 제61류 편물제 의류는 43.7% 감소하였고, 제62류 직물제 의류의 경우는 무려 68.7%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대미 의류수출이 급감세를 보이는 것은 견, 양모, 면, 기타 식물성 섬유 등 천연섬유의 역내 조달이 어려워 yarn forward로 대표되는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고,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과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저임금 국가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에 있어 화학섬유 계통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제27류 정유공정에서 출발하여 제39류 수지(resin)로부터 생산되는 HS 제54류, 제55류, 제56류 품목의 경우 연관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운 구조인데다, 최근 산업용 섬유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 태피스트리(tapestry) :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표 2-14> HS 제50류~제63류 대미 섬유류 수출현황

(단위) 금액 : 만불(US\$)

구 분	‘12.3.15 FTA 발효 전					‘12.3.15 FTA 발효 후		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견직물 (HS 50류)	2,942	2,628	1,868	2,430	3,236	3,308	3,051	19,463
모직물 (HS 51)	288	294	213	137	162	122	143	1,359
면직물 (HS 52)	12,591	12,783	11,774	15,347	16,234	15,864	15,861	100,454
식물성 섬유 (HS 53)	204	242	181	329	335	310	283	1,884
필라멘트 (HS 54)	21,278	18,762	14,287	15,325	18,302	21,511	21,577	131,042
스테이플 (HS 55)	21,774	18,166	13,210	16,726	15,927	19,700	19,521	125,024
부직포 (HS 56)	4,504	3,460	1,923	3,340	4,641	5,941	5,748	29,557
양탄자 (HS 57)	1,139	818	250	437	576	574	816	4,610
특수직물 (HS 58)	3,499	3,010	2,328	3,025	3,272	3,343	3,441	21,918
도포직물 (HS 59)	8,553	9,630	8,061	9,564	12,041	13,497	11,304	72,650
편물 (HS 60)	31,342	26,682	21,096	20,965	25,722	24,386	24,100	174,293
편물의류 (HS 61)	42,022	37,601	24,235	24,411	23,818	21,393	23,455	196,935
직물의류 (HS 62)	12,601	7,413	5,274	3,908	3,097	3,051	3,219	38,563
기타제품 (HS 63)	3,398	2,523	2,230	2,277	2,278	2,934	3,665	19,305
합 계	166,135	144,012	106,930	118,221	129,641	135,934	136,184	937,057

출처 :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 관세청 수출입통계 재구성

제3절 한미 FTA 교역성과 분석

1. 한미 FTA 관세양허안

1.1 개요

한미 양국은 모든 섬유류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양국의 교역 구조, 관세율, 수혜효과 등을 감안하여 양허 계획을 수립하였다.²¹⁾ FTA 발효로 인한 섬유류의 관세양허 수준은 미국 측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수입금액의 10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철폐 비율은 우리나라가 수입금액 기준 72%, 품목 수 기준 97.6%이고, 미국은 수입금액 기준 61%, 품목 수 기준 87%로 우리나라가 양허 폭이 더 넓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스웨터(관세율 32%), 양말(관세율 13.5%) 및 남성 셔츠(관세율 28%) 등 225개 품목 가운데 164개(15.5억불 상당) 섬유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또, 발효 5년 이후 철폐 비중은 우리나라가 14.6%에 불과한 반면, 미국 측은 무려 38.8%에 이르러 여기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자국의 민감산업 보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표 2-15 > 한미 양국간 관세양허 내용

(단위 : 백만불, %,)

구 분	우리 측				미국 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1,387	86.8	1,654	61.1
3년	7	0.56	3.2	13.4	-	-	-	-
5년	24	1.9	35	14.6	149	903	504	18.6
10년	-	-	-	-	62	3.9	548	20.2
합계	1,296	100.0	236	100.0	1,598	100.0	2,707	100.0

※수입액 : 2003 ~ 2005년 3개년 평균

출처 : 美 FTA 검증 대응 전략(섬유 및 의류산업)(2013), 한국무역협회 p.29

21) 수출금액('03~'05년도 수입액 평균) : 한국→미국(27억불), 미국→한국(2.4억불)

관세율('03~'05년도 수입액 가중평균) : 한국 9.3%, 미국 13.1%

발효년도 관세수입 감소('03~'05년도 수입액 기준) : 미국 2.4억불, 한국 0.2억불

1.2 주요 품목별 양허 일정

화섬스웨터, 남성셔츠, 모직물, 면양말, 화섬단섬유 등은 즉시 철폐하고, 면직물, 면셔츠, 화섬편물 블라우스(관세율 6.0~32.0%), 화섬편물(탄성사 함유), PEF직물(관세율 6.0~32.0%) 등은 매년 10~20%씩 관세율을 인하하여 5~10년 동안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2-16> 대미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 일정

즉시 철폐 (품목, 수출, 관세율)	5년 철폐 (품목, 수출, 관세율)	10년 철폐 (품목, 수출, 관세율)
· 인조 스웨터:277(32.0%) · PE 단섬유: 140(4.3%) · 남성 합섬 셔츠:134(25.9%) · 면양말 : 134(13.5%) · 합섬 모포 : 36(8.5%) · 남성 모직 정장 : 25 (27.3~17.5%)	· 남성 면셔츠: 67(19.7%) · PEF 직물:61(14.9%) · 화섬 양말:59(14.6%) · 면직물:54(6.0%) · 화섬 편물(염색): 38(10.0%) · 합섬 편물 블라우스:17(32%)	· 화섬 편물(탄성사함유 등): 141 (12.3~10.0%) · PE 강력사 : 53(8.8%) · PEF 직물(염색): 24(14.9%) · 남성 면셔츠(편물): 25(16.6%) · 여성 면바지(직물): 25(16.6%)

주: 수출은 미국 수입통계 기준(백만불, 2003~2005년도 평균)

출처: 섬유패션산업설명회(2012.5), 섬유패션산업의 FTA이해와 활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p.4

2. 한미 FTA 교역성과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대미 전체 수출품목 가운데 FTA 수혜품목이 연평균 8.0%, 非수혜품목이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수출성과에 따라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2012년도 2.59%에서 2013년도 2.75%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7>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12.3월 한미 FTA 발효		
					2012	2013	‘14.1
수출 (증가율)	463.8 (1.3)	376.5 (-18.8)	498.2 (32.3)	562.1 (12.8)	585.3 (4.1)	620.5 (6.0)	48.6 (-2.0)
수입 (증가율)	383.7 (3.1)	290.4 (-24.3)	404.0 (39.1)	445.7 (10.3)	433.4 (-2.8)	415.1 (-4.2)	36.2 (1.3)
교역 (증가율)	847.4 (2.1)	666.9 (-21.3)	902.2 (35.3)	1,007.8 (11.7)	1,018.7 (1.1)	1,035.6 (1.7)	84.8 (-0.6)
무역수지 (증감액)	80.1 (-5.4)	86.1 (6.0)	94.1 (8.0)	116.4 (22.3)	151.8 (35.5)	205.4 (53.6)	12.4 (-1.5)

출처 : Trade Focus Vol.13 No.12(20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1
(원출처 : USITC, KITA.net)

<표 2-18> FTA 혜택별 대미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연도	한미 FTA 발효(‘12.3.15)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2년간 연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증가율
수혜품목	181.7	208.5	14.8	212.1	1.7	34.1	8.0
非수혜 품목 ²²⁾	384.9	380.3	-1.2	410.2	7.9	65.9	3.2
전체	566.6	588.8	3.9	622.3	5.7	100.0	4.8
美수입 점유율	2.57	2.59		2.75		-	

출처 : Trade Focus Vol.13 No.12(20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5
(원출처 : USITC, KITA.net)

22) 주 : 대미 수출의 19.3%를 차지하는 HS 8704 승용차(2016.1.1부터 인하)는 현재
시점에서 관세 인하가 되지 않아 비수혜 품목으로 분류

3. 주요 경쟁국가와 수출실적 비교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2년간 FTA 교역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은 경쟁국보다 나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에 힘입어 우리나라 FTA 수혜품목의 연평균 수출증가는 8.0%로 같은 기간 동일 품목군에 대한 일본 3.2%, 중국 5.6%, 대만 4.0% 등 경쟁국의 실적을 능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수출부진은 2011.3 東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대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발효 이전 2010~2011년도 연평균 약 100억불 흑자에서 2013년도에는 약 200억불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전체적인 성과는 투자(investment), 서비스(service) 및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분야의 개방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보호기간의 연장(70년) 등 무역의 수지 변수들이 많아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표 2-19> 한미 FTA 이후 주요국가의 대미 수출 비교

(단위 : 전년 대비 %)

연도	2012년			2013년			FTA 발효 이후 2년간 연평균		
	수혜	非 수혜	전체	수혜	非 수혜	전체	수혜	非 수혜	전체
한국	14.8	-1.2	3.9	1.7	7.9	5.7	8.0	3.2	4.8
일본	15.2	12.7	13.5	-7.5	-4.2	-5.4	3.2	3.9	3.7
중국	6.6	6.5	6.6	4.5	2.7	3.5	5.6	4.6	5.0
대만	8.9	-13.0	-6.1	-0.6	-3.4	-2.4	4.0	-8.3	-4.3
對 세계	1.4	4.7	3.1	-2.5	1.7	-0.4	-0.6	3.2	1.3

출처 : Trade Focus Vol.13 No.12(20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6
(원출처 : USITC, KITA.net)

4. 산업별 대미 수출실적 분석

4.1 전체 수출실적 분석

산업통상자원부(2014) 자료에 의하면 대미 수출은 발효 1년차('12년 3월15일~'13년 3월14일)에 1.6%, 발효 2년차('13.3.15~'14.3.14)에는 5.4%가 증가했다. 발효 1년차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0%로 오히려 감소하고, 발효 2년차에도 2.6%만 증가한 것에 비추어보면 대미 수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품목의 경우 발효 1년차에는 10.9% 증가해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이끌었지만, 2년차 증가율은 4.9%로 비혜택 품목(휴대폰 등)의 수출(5.7%)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교역은 2011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소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035.6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2012년과 2013년 대미 수출은 증가세에 힘입어 2012년도 151억 달러, 2013년도에는 205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2-20> 발효 연차별 대미 수출 증가율(%)

구 분		1년차 (2012.3.15~2.13.3.14)	2년차 (2013.3.15~2014.3.14)
전체 수출		-2.0	2.6
대미 수출	전 체	1.6	5.4
	수혜품목	10.9	4.9

출처 : 본문 내용을 연구자가 도표로 구성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FTA로 인하여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 수혜 품목의 대미 수출은 연간 8.0%씩 늘어나, 일본과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의 증가율(3.2~5.6%)을 상회하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FTA 발효 전 2.57%(2011년)에서 2.75%(2013년)까지 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부품 등 수송기계가 2년간 연평균 증가율 17.0%를 기록하며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혔다. 이어 화학제품(13.1%), 석유제품(10.4%), 금속(6.9%), 전기전자(5.8%), 기계(5.2%)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우선 관세혜택을 입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2.7%), 중국(10.4%) 등 경쟁국의 수출 성과 및 미국의 수입 수요(8.7%)를 큰 폭으로 앞서가는 수치다. 또한 2016년 관세철폐가 예정된 자동차(완성차)의 경우 현재까지 FTA 비수혜 품목임에도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관세 철폐 시 큰 혜택이 기대된다.

4.2 섬유류 수출실적 분석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섬유류는 우리나라 대미 2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7% 증가에 머물고 있는데, 같은 기간 세계 각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전체 섬유류의 수출 평균 증가율 1.5%와 차이가 없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한미 FTA에 있어 섬유류가 수혜품목이라는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섬유를 소재로 한 HS제54류, 제55류 및 제56류 등의 품목이외에는 향후에도 대미 섬유류의 급격한 수출증가가 힘들어 보인다.

아래 표는 2014년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산업별 FTA특혜 대미 수출 현황이다.

〈표 2-21〉 산업별 FTA특혜 대미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산 업	한미 FTA 발효('12.3월) 대미 수출 현황						FTA 수혜품목 2년간 대미 수출 연평균 증가율(%) 비교				
	2012년			2013년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韓 → 美	日 → 美	中 → 美	대만 → 美	세 계 → 美
전체 금액 (증가율)	588.8 (3.9)	208.5 (14.8)	380.3 (-1.2)	622.3 (5.7)	212.1 (1.7)	410.2 (7.9)	8.0	3.2	5.6	4.0	-0.6
수송기계	152.4 (22.9)	38.7 (23.3)	113.7 (22.8)	173.5 (13.8)	43.0 (11.1)	130.5 (14.7)	17.0	2.7	10.4	5.3	8.7
전기전자	127.3 (-20.3)	24.3 (7.3)	103.0 (-24.9)	146.9 (15.4)	25.4 (4.4)	121.6 (18.0)	5.8	8.9	6.8	6.4	4.7
비전기기 (기계)	111.7 (8.4)	39.7 (17.3)	72.0 (4.0)	107.9 (-3.4)	37.5 (-5.6)	70.4 (-2.2)	5.2	2.8	11.8	8.0	5.5
금속	55.0 (21.3)	14.3 (14.1)	40.7 (24.1)	51.5 (-6.4)	14.3 (0.2)	37.2 (-8.7)	6.9	5.1	7.5	3.4	1.5
화학제품	34.3 (5.8)	20.2 (10.2)	14.1 (0.1)	32.7 (-4.7)	23.4 (16.1)	9.2 (-34.6)	13.1	1.0	7.4	5.9	1.5
석유제품	29.8 (28.1)	29.8 (28.1)	0.0 (-)	28.3 (-4.9)	28.3 (-4.9)	0.0 (-)	10.4	16.1	45.8	-59.4	-8.4
가죽/고무 /신발	22.3 (9.1)	18.6 (10.9)	3.7 (1.0)	19.5 (-12.6)	16.4 (-11.9)	3.1 (-16.0)	-1.2	-4.6	4.0	3.9	5.2
기타 제조업품	15.2 (-0.6)	5.8 (-7.0)	9.4 (3.9)	17.0 (12.0)	6.5 (12.0)	10.5 (12.1)	2.1	2.1	5.2	0.5	4.8
섬유 및 의류	12.7 (5.6)	11.4 (5.3)	1.3 (8.4)	12.5 (-1.9)	11.2 (-1.7)	1.2 (-3.8)	1.7	-0.9	1.6	-2.5	1.5
가구 목재 종이제품	7.7 (5.2)	0.4 (32.4)	7.3 (4.0)	8.7 (13.7)	0.6 (56.8)	8.1 (11.3)	44.1	3.3	12.2	23.3	12.0
광물 및 귀금속	5.1 (-38.9)	1.3 (4.9)	3.8 (-46.7)	5.5 (8.3)	1.2 (-7.0)	4.3 (13.7)	-1.2	4.0	2.7	-3.0	4.0
농수산 식품	5.6 (18.0)	3.6 (9.6)	2.0 (37.3)	6.4 (14.6)	4.2 (16.8)	2.2 (10.6)	13.2	-0.3	7.3	9.4	6.5

출처 : Trade Focus Vol.13 No.12(20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9
(원출처 : USITC, KITA.net)

제3장 한미 FTA 섬유류 협정문 분석

제1절 원산지제도의 일반 체계

1. 원산지증명서의 유통

FTA 체결 당사국 간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입하는 물품의 일반적인 교역 흐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출국	수출 오더 → FTA 원산지기준 검토 → 무역 계약 → 제품 생산 → 수출통관 → 선적 → C/O 발행 → 선적(상업)서류 송부
수입국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통관 → FTA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증명서는 각종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FTA특례법이나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공정무역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와 목적, 근거법령 등을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3-1>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구 분	특혜 C/O		비특혜 C/O
	FTA 특혜	일반 특혜	
목 적	양자간 관세혜택	다자간 관세혜택	공정무역 및 소비자 보호 (수입제한, 반덤핑 등)
근거 법령	FTA 특례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비 고	FTA 협정별 C/O	WTO, GSTP, APTA 등	원산지 표시

출처 : 관세청 업무자료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

FTA 원산지증명은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EU, 터키, EFT, 칠레와 발효를 앞둔 호주(호주는 기관발급 병행), 캐나다는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형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칠레·캐나다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EU, 페루, EFTA, 터키, 호주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급하는데, 다만, EU와 페루는 수출자(exporter)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를 부여받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증명인의 성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 7개(포괄증명은 8개) 기재사항을 기재하거나,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만든 권고서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표 3-2> 한미 FTA 원산지증명 방법

증명주체(자율)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발급형식	서면 또는 전자증명
증명내용	1.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신원정보) 2.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3.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4.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함) 5.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6.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ex)Made in USA 7. 증명일자 8. 증명서 유효기간(1년 범위 내 포괄증명인 경우)
유효기간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부가조항	- 발급 시기 제한 없음(선적 후 발급 가능) - 과세가격 미화 1천불이하 증명 면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신청 가능

출처 : 한미 FTA 협정문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

미국과 EU 모두 원산지 정보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자동차, 섬유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우리나라의 원산지확인서와 비슷한

제조자진술서(M/A : Manufacturer's Affidavit)를 이용하고 있고, EU는 인증수출자 제도(approved exporter)²³⁾ 이외에 공급자가 발행하는 공급자 신고제도(Supplier's Declaration)를 두고 있다. 양자 모두 생산·공급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물품취급수수료(MPF : Merchandising Processing Fee)²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미 FTA 적용을 받아 수출하는 물품은 철강제품(ex, HS 7312, 7317)처럼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3. 협정별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비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에 나와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협정문에서 정한 소정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도 협정마다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법이나 기재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3-3>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C/O) 명칭

C/O 명칭(협정문상 영문 표기)		적용 국가
"증명"	Certificate	미국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EU, 터키
"원산지증명서"	Proof of Origin	E ²⁵⁾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페루, 인도, (호주, 캐나다)

출처 : FTA협정문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

23) 한-EU FTA에서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지정은 의무사항이다.

24) 2,000달러 이상의 물품에는 수입가격의 0.21%(건당 최대 \$485), 2,000달러 이하에는 자동신고의 경우 \$2, 수동신고의 경우 개인은 \$6, 법인은 \$9을 부과한다. 한미 FTA를 통해 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액은 연간 약 4,700만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자료)

25) 한-E(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상대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고, 참고로 한-EU(유럽연합) FTA 회원국은 2014.9 현재 28개국이다.

제2절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검증제도

1. 원산지결정기준

1.1 원산지 상품의 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문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FTA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ly transformation)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실질적 변형기준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이 일어날 때 적용하는 판정기준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ule), 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 Rule), 특정공정기준(SP : Specific Process Rul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위에서 열거한 각종 실질적 변형기준을 선택(OR)하거나 조합(AND)하는 기준도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²⁶⁾ 품목분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거래 상품명과 HS번호를 연계하는 품목분류 결정은 대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많은 지식과 품목분류 해석요령을 겸비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고난이도 작업이다.

한미FTA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원산지 상품으로 정의한다.²⁷⁾

- (a)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wholly obtained : WO)
- (b)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원산지결정기준)

26) HS : HS는 WCO에서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로 Full Name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고, 줄여서 「Harmonized System : 조화제도」라고도 한다. 현재 시행되는 2단위 류(CC)는 제1류~제97류, 4단위 호(CTH)는 1,221개, 6단위 소호(CTSH)는 5,052개이다.

27) 한미 FTA협정문 제6.1조(원산지 상품, Originating Goods) 참조

- 또는 부속서 6-가(※나머지 일반품목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CTC))을 거치거나,
-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 RVC)이나 그 밖의 요건(ex, specific process rules : SP(특정 공정기준) 또는 combined rules(조합기준))을 달리 충족시키며,
 - 그리고,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상의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the good satisfies all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또는
- (c)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roduced entir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 PE)

이는 다른 FTA 협정에서 정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 공정기준 및 조합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에 있어 한EU FTA에서는 MC법(iMport Contents Method)²⁸⁾을, 한미 FTA에 있어 자동차와 엔진 및 그 부분품에 대하여 직접법, 공제법 이외에 순원가법(net cost method)²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같이 한다.

<표 3-4> FTA 원산지결정기준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기본 원칙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 누적기준 · 최소기준(미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세트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공통 기준	일반 주해, 부류의 주(Note)를 포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HS) 체계에 근거하여 구성
	개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출처 : 관세청 업무자료

28)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비 / EXW] × 100%, 일명 역외산재료 최대 허용법

29) 부가가치비율 =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 / 순원가] × 100%

순원가법에서 '순원가 = 제조원가' 개념이다. 현재 국내 상당수 자료는 이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1.2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³⁰⁾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주로 광물·농산물·수산물 등 1차 생산품에 많고, 공산품에는 상대적으로 적용비율이 낮다. 이는 당해 물품이 역내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여기에는 채취(광물), 재배 및 수확(농산물), 출생 및 사육(동물), 수렵·어로(수산물), 일정 요건 하에 영해 밖이나 해저에서 취득물품, 당사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우주에서 획득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 밖에 제조 또는 가공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만 중고수집품 등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가 비원산지 재료 여부를 불문하고 완전생산물품으로 간주된다.³¹⁾ 특이한 점은 한미 FTA의 경우 여기에 재제조 상품(remufactured goods)³²⁾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1.3 실질적 변형기준

1.3.1 세번변경기준

세번(HS Code)이라 함은 관세, 무역통계, 국제운송·보험 등을 위하여 특정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부호로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정해진 국제표준으로 6단위까지는 체약국에서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개별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Rules ;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³³⁾은 HS 2단위변경(CC ; Change of Chapter), HS 4단위변경(CTH ; Change Tariff Heading), HS 6단위변경(CTSH ; Change Tariff SubHeading)기준이 사용되는데, 제1류~제97류까지 산업별·가공단계별 구조로 되어 있는 HS는 2단위가 4단위보다, 4단위가 6단위보다 상품의 포괄 범위가 크므로 요건 충족이 더 어렵다.³⁴⁾ 세번변경

30) 한미FTA협정문 제6.1조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s) 정의 참조

31) 한미 FTA 협정문 제6.22조(정의) :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의 정의 참조

32) 협정문 제1.4조(정의) : 재제조 상품이라 함은 HS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0류나 제9402호에 분류되는 상품 중, 제6.22조에서 정의된 재생용품(recovered goods)에 해당되고,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지며, 품질이 보증되는 것. ex, 중고자동차 부품

33) 한미FTA협정문 제6.1조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s) 정의 참조

기준은 원칙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산지결정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원자재에 대한 정확한 HS 품목분류가 전제되지 않으면 원산지 판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한미 FTA 섬유 및 의류의 경우 외견상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내용상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한미 FTA에 있어 HS 제5201.00호의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외견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HS 제5201.00호의 원면(cotton)은 제52류 이외의 다른 류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된다.

HS	품목명 Item	원산지기준 Preference Criterion
5201.00	원면(cotton) (카드 또는 코옴한 것 제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2 부가가치기준

한미 FTA에 있어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rules)³⁴⁾에서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 가격으로 채택하는 제품가격은 WCO 관세평가 협약에 따라 운임, 보험료 등을 공제한 조정된 가치(adjusted value)를 기준으로 하여 역내에서 창출된 가치의 비율로 결정한다. 한미 FTA에 있어서는 이를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s)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수출국에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인정비율은 협정별·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EU, 인도, 아세안 등 다른 협정과 달리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1.3.3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s)은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4) HS는 기본적으로 산업별, 가공단계별 구조를 취하고 있다.

35) 한미FTA 협정문 제6.2조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참조

예를 들면, 의류는 재단·봉제공정 수행 국가를,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 있어 의류 제품의 경우 순수한 재단, 봉제공정 대신 대부분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괄호 안에 단서조항을 두어 단서조항(ex. 000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에서 언급하는 원자재(0000호)는 반드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³⁶⁾ 즉, 의류는 일반 원산지기준에서는 재단, 봉제공정 수행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취급하지만, 한미 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FTA협정에서는 순수한 특정공정 기준은 없고, 그 이전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사(yarn)나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역내에서 재단, 봉제공정을 수행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HS	품목명 Item	원산지기준 Preference Criterion
6201.12	남성용 면제 오버코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201.11호 내지 제620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5204호 내지 제5212호, ...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공정이 수행된 것. 2.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2. 원산지결정기준 특례규정

2.1 개요

실질적변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충기준으로는 누적조항(accumulation),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최소허용기준(微少(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

36) 한미FTA협정문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항 나

원산지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와 관련된 주요 특례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항공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 걸쳐 원자재 조달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FTA 원산지 결정이 더욱 더 어렵고 중요하게 인식되어진다.

2.2 누적조항(Accumulation)

2.2.1 개념

물품의 원산지결정시 자국은 물론 계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재료 또는 공정)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accumulation)이라고 한다.

이는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누적기준은 협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재료누적에 의하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공정누적에 의하면 가공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³⁷⁾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투입요소 측면에서의 누적은 역내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으로 재료 또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재료누적(material accumulation)과 역내국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에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다음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정누적(process accumulation)이 있다. 재료누적은 모든 FTA협정문에서 허용하고 있는 반면, 공정누적³⁸⁾은 일부 협정문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공정누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국내 제조공정 누적을 활용하고, 이를 입증하는 ‘국내제조 확인서’의 발급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누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의 경우, 상대국 공정을 자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37) 누적조항 활용은 산업별 업종 제한이 없으며, 국내 가공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부분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특히 부가가치기준에서) 반영될 수 있다.

38) 칠레 제4.5조, 미국 제6.5조, 싱가포르 제4.9조, 페루 제3.6조, 호주 제3.5조, 캐나다 제3.7조 등이다.(2014.12 현재 나머지 발효(예정) 중인 협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2.2 FTA특례법 시행규칙 검토

우리나라 FTA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3(원산지확인서)³⁹⁾은 FTA협정문상 재료 누적 내지 상품누적을 활용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⁴⁰⁾는 FTA협정문상 공정누적을 활용한 사례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누적조항(accumulation)은 FTA원산지결정기준의 단순한 특례(보충) 기준이 아니라, FTA체결 목적의 하나이며 실질적으로 FTA의 근간인 셈이다. 현재 누적조항을 활용한 실무 사례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누적조항을 활용한 실무 사례

재료(상품)누적	수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유통, 중간재 규정
	수입	상대국 C/O 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수리 필증 제시
공정누적	수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발급 유통
	수입	상대국 수출신고수리필증(위탁가공) 및 수입신고수리 필증(위탁가공) 제시 ex)역내국가에서 재단,봉제수행

출처 : FTA협정문과 국내 법령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

2.3 최소허용기준 (미소기준, De minimis, Tolerance Rule)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39) FTA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0) FTA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에 있어 이 기준이 없으면 단 0.1%의 비원산지재료 때문에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물론 최소기준 범위 내의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원산지 재료비에 계산된다. 각 FTA협정문에서는 일반품목, 농수산물, 섬유류에 대해 허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미국·인도는 섬유류 제품에 대해 전체 중량기준 7%⁴¹⁾까지, 칠레·싱가포르 8%까지, 나머지 FTA체결국은 대체로 10%까지 비원산지 재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2.4 간접재료

2.4.1 개념

이는 중립 재료(neutral elements)라고도 한다. 한미 FTA에 있어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⁴²⁾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간접재료의 범위는 다른 FTA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⁴³⁾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41) 한미 FTA협정문 제4.2조 제7항 및 부속서 4-가 제11부 규칙1 참조

42) EU, 칠레, 싱가포르 FTA 협정문에는 중립재 또는 중립요소(neutral element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3) 한미 FTA협정문 제6.22조(간접재료) : indirect material means a good used in the production, testing, or inspection of a good but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good, or a good used in the maintenance of buildings or the operation of equipment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a good., including ;

- 바. 상품이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2.4.2 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

한미 FTA6.12조를 검토해 보면,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는 완전생산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⁴⁴⁾에서만 이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FTA 협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제조회가 산출 시 한·칠레 FTA는 원산지 재료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FTA협정에서는 제조경비(제조 간접비)에 포함시키게 된다. 따라서, 간접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에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제조경비(제조간접비)로 산입하면 되는 것이다.

3.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

3.1 원산지검증 일반 절차

3.1.1 개요

미국 측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은 화물반출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납세신고(Entry Summary)를 한 후 CBP 측의 정산(Liquidation)이 있기까지 3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CBP Form28(Request for Information)로 수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CBP Form29(Notice of Action)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결정내용(납부고지)을 통보한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수입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수입자 검증'과 수입국(직접검증) 및 수출국(간접검증)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수출자 검증'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자 검증 후 수출자 검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FTA협정문과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44) 한미 FTA에 있어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역내가치 포함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3.1.2 원산지검증 대상

FTA 원산지 검증 방법은 검증 주체를 기준으로 직접 검증 방식과 간접 검증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미 FTA상 검증대상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 방식은 수입 당사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의뢰하여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미 FTA의 경우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하여는 수출 당사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거나 공동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한미 섬유류 공동검증의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입 관세당국이 수출 관세당국의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permitting)하여야 한다’는 내용⁴⁵⁾을 근거로 이는 실질적으로 직접검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⁴⁶⁾ 한-미 FTA에 있어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원산지 검증은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에 규정된 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일반물품의 원산지 검증절차는 협정문 제6.18조에서 규정⁴⁷⁾하고 있다.

3.2 원산지검증 방법

3.2.1 개요

미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할 때는 ①서면에 의한 정보 요청 ②서면질의 또는 ③사업장 방문조사(현장 검증)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5)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6항

46) 한미 FTA에서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안내 p. 5(한국관세포럼, 2013, 임성균)

47)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a)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 (b)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c)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d)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 (e)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 수입 당사국이 (a)호 또는 (b)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조사 목적은 협정문 제6.17조(기록유지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기록의 유지 의무에 따라 해당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주어진 예산, 인력 및 시간의 제약으로 수입자 검증을 우선⁴⁸⁾하고, 수입 신고 수리 후에 검증이 진행되며, 현장방문보다는 서면방식에 의한 검증이 우선 진행되는 것이 실무적인 운영 형태라 할 수 있다.

미국 관세청은 관세 징수액의 약 46~47%를 차지하는 섬유류의 검증을 위하여 섬유제품 검증팀(TPVT ; Textile Products Verification Te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팀은 미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하여 1991년부터 설치 운영한 점프 검증반(Jump Team)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⁴⁹⁾ 이들은 연간 해외검증 계획에 따라 원산지 검증 대상국가와 기업을 선정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표 3-6> 미국 세관당국의 FTA 검증 원칙⁵⁰⁾

구 분	내 용
서면검증 우선원칙	FTA원산지 검증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의 결과 심층적인 원산지검증이 필요한 때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수입자 검증 우선 원칙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 조사
수입신고 수리 후 검증원칙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FTA 원산지 검증 수행

출처 : 한국관세포럼(2013),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FTA활용에 대비한 국제원산지 검증방안, 임성균, p.72

3.2.2 검증제도의 운영

FTA 원산지 검증을 미국 수입통관 절차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우선 미국 관세청

48) John David Jackson(US CBP 한국주재 관세관), 2014 INTERNATIONAL ORIGIN CONFERENCE, COEX, SEOUL

49) 한국관세포럼(2013),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FTA활용에 대비한 국제원산지 검증 방안”, 제45차 관세포럼, p.72(임성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원산지 검증절차 안내)

※ 심갑영(2012) 상계서 : 섬유류가 미국 관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7%로 표시

50) 우리나라 FTA특례법에서 정한 검증방법도 이와 같다.

(CBP)은 특정 수입신고 건(Single Transaction)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total transaction)에 대한 검증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산지 검증 대상 선별기준은 CBP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알려진 바로는 법규 준수도 측정(compliance assessment)시스템에서 평가점수가 낮거나(high risk)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최초 수입 등), 미국 관세청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검증하려는 업종(섬유류, 자동차 등) 위주로 선별한다.

<그림 2>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 흐름도



출처 : 심갑영(2012), 우리나라 對美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 고찰, 月刊(월간) 관세

미국 관세청에 의한 한-미 FTA 검증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이행관련 미국 관세청 규정(CFR)⁵¹⁾과 수입물품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통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관련 사항은 제10.1026조~제10.1029조에 규정되어 있다.⁵²⁾ 미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관련 규정 제10.1026조

5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Parts 10, Subpart R-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참고로, 미국 관세법을 줄여서 U.S.C로 표기한다.

52) 한국관세포럼(2013),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FTA활용에 대비한 국제원산지 검증 방안”,

(§10.1026)에 따르면 세관장(port director)은 한-미 FTA에 의한 수입자의 특혜 관세 대우 신청(claim)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된 정보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2.3 섬유류 미국세관 지침(TBT)

미국 관세청(CBP)은 주요 업무과제(PTI : Priority Trade Issue)를 선정, 그 중 섬유·의류 부분 Textile PTI⁵³⁾를 운영, 섬유·의류 상품의 특혜 및 비특혜 교역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Textile PTI를 관리하는 섬유규제 운영부는 수출입자 등 무역 관계자들에게 행정 규제 관련 사항을 TBT(Textile Book Transmittals, 섬유류 세관 지침⁵⁴⁾)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TBT는 TBT-97-049(1997.4.28)에 의해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시 제출 서류의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TBT-07-001(2007.1.11)에 의하여 사후 검증이 아닌 섬유·의류제품 수입통관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후, TBT-07-019(2007.10.10)에 의하여 특혜세율 적용 textile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시 제출서류(M/A)에 대한 추가 규정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TBT-12-003(2012.3.22)에 의하여 특히 M/A(제조사진술서)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안내하고 있다.⁵⁵⁾

3.3 섬유류 원산지 검증방법

3.3.1 개요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된 양 당사국이 각국에서

제45차 관세포럼, pp.69~70(임성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원산지 검증절차 안내)

53) Textile PTI의 목표는 미국 관세청 세수의 46~47%를 차지하는 섬유·의류 제품의 수입 활동이 관련 법령, 쿼터, 자유무역협정 규정, 그리고 지적재산권 규제사항을 완벽히 준수 하는데 있다.

54) '섬유류 세관지침'은 미국 세관당국이 섬유류 수입통관 관련 정책과 세부시행 사항 등을 각 세관에 전달하는 지침으로 영문 명칭은 'Textile Book Transmittals'(TBT)이다.

55) 자세한 내용은 섬유패션산업 동향(2013.4월호), 한미FTA원산지사후검증서류,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p.23 참조

기본 관세율보다 우대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수입자의 의무를 강조한 ‘통관 현대화법(Customs Modernization Act, 1993)’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에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진다. 수입자의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는 수출자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FTA 무역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⁵⁶⁾ 따라서, FTA 특혜관세 수혜자인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영업비밀상 이유로 수입자에게 자료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 ‘서면검증’관련 정보를 세관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⁵⁷⁾ 섬유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적용 폭이 커 원산지 세탁을 통한 제3국 물품을 우회 수입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품목이다.

3.3.2 섬유류 검증 방법

섬유의류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 검증 절차와 방법은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3항~제6항에서 정하고 있다. 검증대상자가 수출 생산한 섬유·의류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였다는 합리적 의심(resonable suspicion)⁵⁸⁾을 하는 경우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당사국은 자체적인 발의에 의해서도 섬유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⁵⁹⁾

미국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결과를 전국세관, 상무성의 섬유협정이행위원회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섬유협상가에게 통보하고, 일선세관은 이 결과를 참고로 해서 원산지검증 업무에 활용한다.

협정문상 섬유류에 대한 검증은 수출국에서 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섬유류 제품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검증 방법에 대해서 요약하면 아래 <표 3-7>과 같다.

56) 한국관세포럼(2013),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FTA활용에 대비한 국제원산지 검증 방안, 제45차 pp.74~75(원저자 : 임성균, 한미 FTA에서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안내)

57) 한미 FTA협정문 제6.18조(검증) 제1항 마호

58) 한미FTA협정문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제5항 및 제7.5조(협력)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59)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3항

<표 3-7>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검증 방법

구 분	간접검증	공동검증
근 거	협정문 제4장 제4.3조 제3,8,10,11항	협정문 제4장 제4.3조 제6,8,10,11항
검증사유	(1)수입 당사국 요청 (2)수출 당사국 자체 발의 (3)수입 당사국의 합리적 의심 ⁶⁰⁾	원산지 검증수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출자, 생산자, 기타 관련자 有
검증방법	수출 당사국 검증 요청	수출국 관세당국과 함께 사업장 방문
중간조치	불법행위 의심, 간접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특혜관세의 적용 중지 ⁶¹⁾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결정기간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서면 보고서 상대국 제공)	
최종결정	검증대상 상품 및 그 인(인)이 생산한 유사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 부인 (denying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사유) 12개월 이내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자료 미제출, 방문 거부, 허위 증명 등) 및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절차) 조치 전 수출 당사국 통보, 우회수입 관여자 및 미입증자 명단 공개	
비 고	당사국 요청이 있으면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상품 검사 후 상대국에 정보제공(제4.3조 제4항)	

출처 : 한미 FTA협정문 제4.3조를 도표화하여 연구자가 구성

3.3.3 CBP Form 28- CBP에 의한 자료요구

수입자로부터 CBP Form 28을 통보받은 수출자는 이로써 원산지사후검증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30일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0)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우회(circumvention) 수입하거나 다른 국제협정을 위반하여 당사국 권리 침해

61)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8항

참고로, CBP Form 28과 CBP Form 29는 FTA 특혜관세 원산지검증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서식은 아니고, 수입신고(Entry summary)후 심사단계(Liquidation)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으로 비특혜 수입신고서의 세율, 과세가격 심사 시에도 널리 사용된다.

3.3.4 우리나라 섬유업체에 대한 미국CBP 정보요청 사례

아래 내용은 2013년도 미국세관이 수입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보낸 CBP Form 28 서식이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한 HS 5607.49 폴리프로필렌 직물제 로프 3종류에 대하여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청 규정(19 CFR 10)에 의거 미국 관세 양허표에 의한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증을 할 예정이다. 귀사는 한미 FTA특혜관세 적용을 주장할, 여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원산지확인서, BOM(자재명세서), 가격자료(원가계산서), 섬유류 제조자진술서 (yarn affidavits), 제조 생산기록 등

이러한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적 시 상업송장 상에 표시된 각각의 로프에 대한 sample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요지이다.

원산지 검증 시 미국이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여기에 대한 회신은 한미 FTA 협정문에 의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 후 CBP Form 29 서식에 의해서 서면검증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최근 미국정부의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2014년도 6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oo세관에서 경인지역에 소재하는 대미 섬유류 수출업체 20개에 대하여 원산지 조사(검증)를 실시한 적이 있다. 관련 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2014년 9월경에 미국 관세당국으로 최종 검증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CBP form 28에 의한 정보요청 사례

OMB No. 1651-0023; Exp.5-31-201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Continuation Page 19 CFR 151.11		1. Date of Request 03/11/2014
		2. Date Entry and importation 08/09/2013-08/08/2013
3.Manufacturer/Seller /Shipper KROOOO0277BUS	4. Carrier CC DA:OA:A-836	5.Entry No. 4710131xxxx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POLYPROPYLENEROPE-3strand, Z Twist, leaded ro	5b. Invoice No. 20130625-120	6.HTSUS item No. 5607.49-2500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John M. Bryce	
14. CBP Office Message REQUEST FOR INFORMATION : The following good(s). 3style of polypropylene rope was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ropes pursuant to 19.CFR 10 ⁶² .1001 through 19.CFR 10.1034.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ope is origination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d your claim for UKFTA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 cost data, as well as yarn affidavit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These documents must be in the English language. Please provide a sample of each style rope as described on the commercial invoice of this shipment for classification review.		
17. CBP Officer Grace Carmichael	18.Team Designation 788	19. Telephone No. 206.553.1739

CBP Form 28(08/08)

62)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Parts 10, Subpart R-United State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청 규정

3.3.5 CBP Form 29- CBP에 의한 결과통지

CBP Form 29(Notice of Action)는 검증 후 원산지 부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 등 후속조치를 표기하고, 세관당국의 판단 이유, 부인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미국 세관당국은 CBP Form 28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정적(negative)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CBP Form 29를 이용하여 예비결정(proposed determination) 또는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통보한다.

서식 29에서 예비결정은 'IS PROPOSED ACTION'에 체크하고, 최종결정은 'HAS BEEN TAKEN ACTION'에 체크한다. 예비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입자는 20일 이내 추가 자료(additional information)를 제출하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최종결정은 부족 관세의 납부결정으로 이미 확정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산 후에는 이의제기(Appeal)나 법원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⁶³⁾

예비결정 또는 최종결정 유형(TYPE OF ACTION)으로는 RATE ADVANCE(관세를 증가), VALUE ADVANCE(과세표준 증가), WEIGHT or QUANTITY EXCESS(중량, 수량 초과), OTHER(기타)로 나누어진다. CBP Form 29 서식 13번 란에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4 섬유류 수출입자의 의무사항

3.4.1 제조자식별 코드(MID)

섬유·의류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자는 상대국 수출자가 제공하는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서(C/O) 이외에 해당 Textile 제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 제조자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⁶⁴⁾. 이를 제조자식별 코드(MID : Manufacturer's Identification)라 하는데,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입자가 제조 국가명과 제조자 이름, 주소를 조합하여 일정 규칙에 따라 생성한 코드이다. 이때, 미국 수입자가

63) 한국관세포럼(2013),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FTA활용에 대비한 국제원산지 검증 방안, 제45차 p.86(원저자 : 임성균, 한미 FTA에서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안내), 한미FTA 협정문 제6.18조(검증) 제4항~제5항 참조

64) Federal Register, Vol 76, No.52

작성, 제출하는 MID는 해당 섬유, 의류제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공정'을 수행한 실제 제조자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류 제품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단 봉제 가공공정을 수행한 제조자가 소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공정(origin-conferring operation)'을 수행한 제조자이다.⁶⁵⁾

<MID 코드 예시>

제조자명 : A.B.C COMPANY

주 소 : 55-5 Hung To Road, P.O. BOX 1234, Kowloon, Hong Kong

M I D : HKABCCOM1234HON

3.4.2 제조자진술서(M/A)

제조자진술서(M/A: Manufacturer's Affidavit)⁶⁶⁾는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섬유원료 생산자 및 섬유·의류 가공공정 수행자가 미국 수입자가 권장하는 서식에 따라 생산관련 특정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섬유·의류를 수입하는 미국 내 수입자는 통관 단계에서 C/O, B/L, Invoice, MID code 등을 제출하는 이외에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미국 CBP 섬유류 지침(TBT-07-019)⁶⁷⁾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에 관여한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자 즉, 섬유, 원사, 직물 생산자 및 재단·봉제공정, 염색 등 가공공정 수행자로부터 제조자진술서(M/A)를 제공받아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⁶⁸⁾

최근 미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국내 직물제 로프(rope) 수출업체에게 당해 제품의 원자재 공급자가 작성하고 공증(公證)을 받은 '원산지 진술서(Affidavit of Product Origin)'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미국 세관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섬유·의류제품의 원자재에 대한 제조자진술서 제출을 의무화

65)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 패션 산업동향' 2012.6월호

66) 연구자에 따라 제조자진술서를 제조자보증제도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

67) FTA특혜세율이 적용되는 Textile & Apparel 물품의 수입 시 추가적으로 Manufacturer's Affidavit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TBT : Textile Book Transmittals, 섬유류 지침)

6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 패션 산업동향' 2012.6월호

(2007년도)하기 이전에도 홍콩, 중국, 한국 등 섬유류 우회수출 우려가 높은 국가에 대해 생산증명서 혹은 제조기록(Production Record) 제출을 요구하여 왔다.

<M/A기재 정보>

- 1) 제조자 회사명, 주소, 연락처 및 납품 회사명, 주소
- 2) 작성자명, 연락처 및 수기 서명
- 3) 섬유 함량(fiber content), 원사 규격(yarn count), 중량(weight), 원산지 국가 및 송품장 또는 주문번호, 의류의 스타일 번호(style number) 등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세관당국은 섬유류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손쉽게 원산지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신 섬유류 수출자, 생산자에게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3>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검증 도해



출처 : 본인 논문을 요약하여 연구자가 구성

제3절 한미 FTA 섬유류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협정문 구성

대부분의 FTA 협정문(text)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 FTA 협정문은 약 1,500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분량으로, 전문 용어와 법률적 표현,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 구성, 상품분야에 있어 HS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 기준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미 협정문은 전문과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다음에 총 21개의 Chapter(제2장~제22장)을 두고, 이어 예외조항(제23장)과 최종규정(제24장)의 구성체계로 되어 있다. 협정 제2장부터 제10장까지가 상품교역 분야이고, 그 가운데 제4장에서 섬유류에 관한 협정을 따로 두고 있다. 섬유류 원산지결정기준은 가장 까다로운 분야이다.

<표 3-8> 한미 FTA 협정문 전문 구성

구성 요소	주요 내용
전문(Preamble)	협정 체결의 목적을 선언적으로 구성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장(Chapter)	분야별로 Chapter로 분류하여, 양측 간 합의내용을 본문에 규정
부속서 (Annex)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 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정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
부록 (Appendix)	부속서에 딸린 부록은 부속서 내용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규정
서한 (Letter)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출처 : 기획재정부(2012), “FTA 협정문의 이해”, 대학강의용 표준 교재 제1권, pp.119~122

(원출처 : 대한민국 정부(2007),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정원교)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9개 FTA협정(한-호주 FTA는 2014.12.11 발효) 가운데, 섬유류에 대해 별도의 장(chapter)을 두고 있는 것은 한미 FTA가 유일하다.⁶⁹⁾ 이것만 미루어보아도 미국이 자국의 섬유산업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짐작이 된다.

이것은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NAFTA 포함) 섬유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품목이나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철저한 원산지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3-9> 한미 FTA 협정문 제4장 구성

구 분	내 용
본 문	제4장 : 섬유 및 의류 제4.1조 : 양자 긴급조치 제4.2조 :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제4.3조 : 섬유 및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제4.4조 : 섬유 및 의류 무역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4.5조 : 정의 제6장 :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4-가 : 섬유 및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나 :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출처 : 한미 FTA협정문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

2. 미국의 섬유류 협상 배경

2.1 관세율로 보는 미국 산업구조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내 정치,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3년 5개월간 표류하여 오다가 2010년도 하반기 추가 협상을

69) 한EU FTA에서는 부속서1에서 '부속서2의 목록(=원산지기준)'에 대한 소개 주석(Introduced Notes) 형태로 섬유류에 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다소간 양보⁷⁰⁾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시켰다.

대신, 우리나라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HS 020329-9000, 관세 25%) 관세철폐 시한을 2년 연장(당초 14.1.1→연장 16.1.1)받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아래 관세 양허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 관세부과 품목인 섬유, 신발, 자동차를 3대 보호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섬유류가 전체 관세수입의 약 46~4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민감 품목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관세 양허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산품의 경우는 한미 양국 모두 WTO양허세율을 기초로 비슷한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섬유산업 종사자 수는 2000년에 1백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9년에는 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대로 낮아 졌다.⁷¹⁾

이 절에서는 먼저 미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와 이해집단의 영향력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발효 중인 9개 협정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측 협상 배경을 분석하고,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에 나와 있는 각종 제도, 양국 간 세관협력, 원산지검증 절차,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0)

구 분	관세율		당 초	추가협상 결과
승용차	미 국 (2.5%)	3천cc이하	즉시 철폐	4년간 유지 후
		3천cc초과	3년차 철폐	5년차 철폐
	한국(8.0%)		즉시 철폐	8%→4%로 즉시 인하한 다음 4년간 유지 후 5년차 철폐
화물차	미국(25%)		9년간 균등 철폐 (9년간 감축, 10년차 철폐)	7년간 관세 유지 후 2년간 균등 감축하여 10년차 철폐
	한국(8.0%)		즉시 철폐	변경 없음

71) 이호준(2013),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 P.31, 석사학위 논문

<표 3-10> 미국 관세양허표 예시

미 국				한 국	
HTSUS 8	품목명	기준세율 (일반세율)	양허 유형	기본세율	기준세율 (실행세율)
02022002	쇠고기(냉동, 뼈채 절단)	4%	A	30%	양허40%
03033100	냉동 넙치	0%	K	10%	기본10%
04011000	밀크와 크림(미농축)	0.34센트/ℓ	A	36%	기본36%
07096040	고추류	4.7센트/Kg	A	50%	양허270% (미추천)
12074000	참깨	0%	K	40%	양허630% (미추천)
51121160	양모 직물	25%	A	13%	기본13%
52081980	면직물	10.5%	A	10%	기본10%
54022030	폴리에스터 강력 단사	8.8%	G	8%	기본8%
54081000	비스코스레이온 강력사 직물	14.9%	A	8%	기본8%
551291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14.9%	A	8%	기본8%
61121200	트랙 슈트(합성섬유제)	28.2%	A	13%	기본13%
62021340	여성·여아용 코트(인조섬유)	27.7%	A	13%	기본13%
62052020	남성·남아용 셔츠(면)	19.7%	D	13%	기본13%
64041140	스포츠용 신발(섬유제 겹피)	37.5%	A	13%	기본13%
73181600	철강제 너트	0%	K	8%	기본8%
84181000	냉장 - 냉동고	0%	K	8%	기본8%
85171980	스마트폰	0%	K	0%	양허0%
87032300	승용차(1500초과~3000cc이하, 휘발유)	2.5%	A	10%	양허8%
87033200	승용차(1500초과~2500cc이하, 디젤)	2.5%	C	10%	양허8%
87042250	화물자동차	25%	G	10%	양허0%
87089955	자동차 부품	2.5%	A	8%	기본8%
89019000	화물선	0%	K	무세	무세

- 주 : 1. 2006. 1. 1기준 미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름
 2. 양허유형 A:즉시철폐, C:3단계 균등철폐, D:5단계 균등철폐, G:10단계 균등
 철폐, K:지속적 무관세 대우
 3. 기준세율(base tariff) : 2006.1.1 기준으로 미국은 일반관세율(general
 rates)을, 한국은 최혜국세율(MFN : (most favored nation)을 의미함

출처 : ‘한미 FTA협정문 일반주해(General Notes) 미국·한국 관세양허표’를 연구자가 재구성

2.2 이해집단의 영향력 증대

FTA는 대외 포괄적인 정책행위로서 자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 각국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특정산업 피해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 완화, 손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참여기회 보장, 경제정의 실천을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민간단체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대외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FTA협상에서 이해집단의 지나친 목표추구는 한미 FTA 섬유류 협정(제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 체결 취지나 WTO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

한미 FTA에 있어 섬유류는 쇠고기 도축기준(다른 류로부터 변경된 것) 채택 및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와 함께 미국 내 이해집단의 참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 생각된다.

김홍률(2012)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집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으로 주요 이해집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²⁾

2.2.1 민간협회 및 로비스트

업계 또는 직종을 대표하여 각종 민간협회 및 로비스트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으로 약 7,000여개의 민간협회가 있다. 이 가운데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있는 협회로는 기업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무역정책위원회’(CNTP : Committer for National Trade Policy)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섬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전기통신, 지적재산권 등 각 산업별 민간협회와 로비스트들이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2 민간자문위원회

미국 정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 2002년 개정무역법 등에서 통상 교섭 시에 노동, 산업, 농업, 서비스, 소비자, 환경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72) 기획재정부(2012), “FTA 이해”, 대학강의용 표준 교재 제1권, pp.87~98(원저자 : FTA의 정치경제학, 김홍률)

있다. 민간위원회가 가장 발달해 있는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USTR(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부)에는 현재 총 26개의 민간자문위원회에 약 70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미국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협상이 종료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2.2.3 시민단체

이 밖에도 미국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공청회(public hearing)를 개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에 기초하여 각종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수한 민간조직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시민단체)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1993년 미국의 통관현대화법(Customs Modernization Act)에 명시된 두 가지 통관원칙 즉, 관세당국이 무역업계에 수출입상의 의무를 상세히 알려주는 대신 자발적 법규준수(voluntary compliance) 및 책임공유(shared responsibility) 원칙과 맞물려 자국의 관심품목인 섬유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한미 FTA협정문 제4장 섬유류 분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다.

2.2.4 부정무역 차단 및 물류보안 관철

한미 FTA협정 제4장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섬유 생산시설 정보제공’은 FTA를 악용한 대미 섬유류 우회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산지 검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또 제3국 상품이 우회수출을 통하여 FTA특혜관세 적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상품(transshipped textile or apparel goods)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4.3조 제4항) 이것은 거대 경제국가 미국이 자국의 물류보안과 부정무역 차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외 경제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밖에도 미국은 물류주체(Supply Chain)를 대상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⁷³⁾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물류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 주요 교역국가에

CBP직원을 파견, 자국으로 수출하는 우범화물에 대하여 관세 당국의 도움을 받아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s)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들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섬유류 원산지결정기준

3.1 개요

일반적으로 섬유류 제품은 섬유(fiber) → 방적공정(spinning) → 원사(yarn) → 제직(weaving) 및 편직(knitting) → 직물(fabric) → 재단 및 봉제(cutting & sewing) → 의류(Apparel)의 순차적 제조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의 공정 중 어느 단계를 기준으로 그 이후 역내생산이 이루어져야 원산지로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섬유기준(Fiber Forward Rule),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 직물기준(Fabric Forward Rule), 재단봉제기준(Cut and Sew Rule)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Fiber Forward Rule에 의할 경우 원산지 인정이 가장 엄격하고, Cut and Sew Rule에 의할 경우 원산지 인정 폭이 가장 넓다. 섬유류의 경우 대체로 수입 국가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선호하고, 수출 국가에서는 재단봉제기준을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칠레, 페루 등 남미국가는 대체적으로 사(yarn)는 섬유기준(fiber forward), 직물(fabric)의 경우는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기준은 yarn forward이고, 한EU FTA 섬유류는 fabric forward라는 이분법적 설명은 맞지 않다.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결정기준이 한EU FTA 섬유류 원산지결정기준보다 좀 더 까다로울 뿐이다.

한미 FTA에 있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협정문 제4.2조 및 '부속서 4-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협정문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이 적용된다.⁷⁴⁾

7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국제 표준이다. AEO 인증업체란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관세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자를 의미한다.

<표 3-11> FTA협정별 섬유류 원산지기준 비교

칠레	싱가포르	EFTA (호주/ 캐나다)	ASEAN	인도	EU/터키	페루	미국
사: Fiber forward	사/의류: CC	사/직물: CTH	사/직물: C T H + RVC40	사/직물: C T H + RVC40	사/직물: Yarn- forward	사: Fiber forward	사: Fiber forward
직물/의류: Yarn- forward	직 물 : CTH	의 류 : CC	의류: CC or RVC40	의류: Fabric- forward	의류: Fabric- forward	직물/의류: Yarn- forward	직물/의류: Yarn- forward

연구자 주 : 편의상 협정별로 정리한 것으로 모든 섬유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출처 : FTA협정문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

3.2 한미 FTA 섬유류의 원산지기준

한미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협정보다 엄격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면, 면사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면사(cotton yarn)가 원산지 재료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섬유(fiber)부터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 FTA에 있어 원사의 원산지결정기준은 fiber forward인 셈이다. 즉, 한미 FTA에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면사(HS5205)는 무조건 역내산(미국 또는 한국) 원면(섬유)을 사용해야 원산지 제품 지위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면직물(HS5208)의 경우에는 역내산 면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든지 아니면 역외산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 면사(yarn)를 제조하는 방적 공정부터 역내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⁷⁵⁾

이때 전 단계 공정수행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공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FTA 특례법

74) 한미 FTA협정문 제4.2조 제2항 참조

75) 섬유류 원산지기준에 있어 이를 소위 'yarn forward' 기준이라고 한다. yarn forward란 직물이나 의류제품이 '실(yarn)'(HS5205(면사))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역내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원산지제품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본인 논문 p.80 도표 참조)

에서 정한 ‘국내제조확인서’이다.

<표 3-12> 섬유류 품목별 원산지기준 해석 방법

HS Code	원산지기준	비 고
6105.20 (인조섬유 남성셔츠)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6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 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 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 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 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 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세번변경기준 (CC rule) + ▶ 원사기준 (언급된 HS Code의 재료는 원산지제품 이어야 함) + ▶공정기준 (재단&봉제기준)

출처 : 한미 FTA(섬유 및 의류산업) 검증대응전략(2013), 한국무역협회 p.34

3.3 원사기준의 예외

3.3.1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rule, 미소기준)

섬유류가 부속서 4-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수입산 섬유 원료 및 원사의 사용은 허용되는데, 이를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rule) 또는 미소기준이라고 한다.

섬유·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HS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component)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품목별 원산지기준(협정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7%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HS 5402.44, 5404.11 탄성사 (elastomeric yarn)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탄성사에 한해서는 De minimis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탄성사는 전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

3.3.2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허용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 예외물량)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즉, 원산지 원재료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수입 당사국은 수출업체에게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16.12.31에 만료된다.⁷⁶⁾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허용 조건 및 절차는 한미 FTA 부속서 4-가 및 4-나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활용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한 협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협정문 제11부(제50류~제63류) 부속서 및 규칙 체계도

부속서	규정 내용	제11부 규칙	류(HS2단위) 규칙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1 ~ 규칙 3 ⁷⁷⁾	제51류~제60류 : 규칙1~규칙3 제61류 : 규칙1~규칙2 제62류 : 규칙1~규칙3 제63류 : 규칙1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예외물량)	-	-
부속서 4-나-1	“부속서 4나”의 목록(대한 민국 목록, 미합중국 목록)	-	-

출처 : 한미 FTA협정문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

76) 한미 FTA 부속서 4-나 제10항 나호(연장검토 가능) 및 제13항(발효 여섯 번째 연도 1월1일부터 종료)에서 규정

77) 부속서 4-가 제11부 규칙1:‘섬유·원사·직물’의 원산지 예외 인정요건, 규칙2:‘의류 걸감’의 원산지 예외 인정요건, 규칙3: 특정 의류제품의 소매를 제외한 몸통부분의 ‘보이는 안감’의 원산지 예외 인정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4-가 제11부 [규칙1]은 품목별 기준에서 ‘원사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예외물량 목록(부록 4-나-1)에 등재된 비원산지 섬유원료 및 원사를 사용하거나 이들과 원산지 섬유원료 및 원사를 혼합하여 역내국에서 생산한 HS 제50류~제60류까지의 원사·직물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혼합하여 생산한 원사·직물에는 중량기준으로 7%까지의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다만, 탄성사는 당사국 영역에서 방적)를 사용할 수 있다.

부속서4-가 제11부 [규칙2]는 예외물량 목록(부록 4-나-1)에 등재된 비원산지 원단(직물, 편물)이나 이들과 원산지 원단을 혼합하여 역내국에서 재단·봉제한 HS 제61류~제62류의 의류걸감(칼라 및 커프스 제외)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역시, 후자의 혼합하는 원산지 원단에는 중량기준으로 7%까지의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다만, 탄성사는 당사국 영역에서 방적)를 사용할 수 있다.

부속서4-가 제11부 [규칙3]은 HS 제61류~제62류의 특정 의류제품에 사용되는 ‘보이는 안감’이 예외물량 목록(부록 4-나-1)에 등재된 것이면, 역내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 되지 않더라도, 즉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⁷⁸⁾

3.3.3. 비역내산 원사의 사용 허용

미국은 NAFTA를 포함한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특혜관세 부여 조건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국내 조달이 어려운 일부 원사의 경우 수입산 원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미 섬유류 수출에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견사(5006),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 등의 원사는 원단 또는 의류 제품의 생산에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제품은 원산지 제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견직물(5007), 린넨직물(5309), 합성 여성자켓(6104), 합성 남성셔츠(6205) 등은 원사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직물 및 의류 제품들이다.

섬유패션연합회(2012) 자료에 따르면 한국 측은 200여개의 요청 품목가운데 33개 품목⁷⁹⁾에 대해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하였다. 미국 측도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78) 협정문 원문 해석이 난해하여 연구자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함

79) 원사기준 예외품목은 ‘04~’06년도 우리나라 대미수출 금액 평균 약 1.35억 달러의 약 5.02%였으나, ‘11~’12년 기준으로 0.4%로 하락하였다(섬유패션산업 동향, 2012.5월호)

제안한 248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확보하였는데, 여기에는 폴리에스터섬유, 폴리에스터사, 기타 순견직물, 기타 합성섬유 등이 포함된다.⁸⁰⁾ 이들 품목은 대부분 완화된 원산지기준으로 이미 협정문에 반영되어 있다.

<표 3-13> 한국 측이 요청한 원사기준 예외 품목

HS번호	품 명	원산지결정기준
4202	외부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202.1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5007	견 직물 (Fabrics of noil silk)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9	린넨 직물 (Linen fabric)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307호 내지 제5308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6104	여성 재킷(Women's jacket) - 합성섬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104.33호 내지 제6104.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5408	비스코스레이온 직물	소호 제5403.10호, 소호 제5403.31호 내지 제5403.32호, 소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6205	남성셔츠(Men's shirts) - 인조섬유	(소호 규칙) 면 또는 인조섬유의 남성 또는 남아용 셔츠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결합된 경우, 그리고 의류 걸감 직물이, 칼라 또는 커프스 ⁸¹⁾ 를 제외하고, 완전히 하나 이상의 다음(*면혼방 합성섬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출처 : 섬유패션연합회(2012) 자료, 외교통상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80) 섬유·의류 원산지 확인 및 심사관리의 적정화 방안 연구(2007), 한국섬유개발원 & 경북대학교, pp.72~73)

81) 칼라 또는 커프스라 함은 의류의 예리(목)부분과 소매(손목)부분을 말한다.

3.4 섬유류 불인정 공정

어떤 상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 단계를 거쳐야 한다.

<표 3-14> FTA 협정별 섬유류 불인정 공정

협정별	근거 조항
칠 레	제4.13조(불인정 공정) -
싱가포르	제4.16조(불인정 공정)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EFTA	부속서 I 제6조(불충분 공정) -
아세안	부록3 제2조(섬유류 불인정 공정) ※부속서 3 제8조(일반품목 불인정공정) (a) 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 (b) 중형 제단 및 끝단 봉제(감침질),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 가능한 직물의스티칭 또는 오버로킹(stitching or overlocking) (c) 끈, 밴드(띠), 구슬, 코드, 고리 그리고 아일릿(eyelet)과 같은 장식품을 집고, 누비고, 잇고 불인 트리밍(trimming) 그리고/또는 결합 (d) <u>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 또는 단지 최종 공정을 수행할 목적의 유사한 공정</u> ⁸²⁾ ;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⁸³⁾ , shrinking, mercerizing ⁸⁴⁾ , or similar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having merely undergone the finishing operations (e) 자수 상품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또는 상품의 총중량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인 도	제3.6조(불인정 공정) (g) 중형 제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 가능한 직물의스티칭 또는 오버로킹(stitching or overlocking) (h) 끈, 띠, 구슬, 코드, 고리 그리고 아일릿(eyelet)과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불인 트리밍(trimming) 그리고/또는 결합 (i) <u>원사, 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 물품에 대한 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수축), 머서라이징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성 공정</u>
미 국	품목별 기준(개별 조항)에서 일부 규정 -
EU, 터키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d)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페 루	부속서 3 제3.5조(불인정 공정) (d)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불인정공정은 단독으로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HS 품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주된 원산지기준에 부수된(and, 동시 충족) 기준으로 두는 사례는 있다. 불인정공정은 세번변경기준에 있어서는 설령 HS품목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직접경비나 제조 간접비 형태로 원가에 산입된다.

4. 양자 긴급조치

4.1 발동 요건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조치)는 섬유시장 개방에 대한 상징적 안전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4.1조에 따르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혜택을 받은 섬유 또는 의류가 수입되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 정지, MFN(실행관세율) 수준까지 그 상품의 관세율 인상과 같은 양자 긴급조치(Bilateral Emergency Actions)를 취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조사 후에만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품목별 관세 철폐 후 10년 내에서 한시적으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고, 2년간 발동(2년 연장 가능)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목에 대한 재발동은 금지된다.

4.2 보상 조치

이 규정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상호 합의하에 다른 섬유 의류 상품에 대해서 이와 동등한 관세양허의 형태로 수출 당사국에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긴급조치 적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국은 이에 상응하는 관세조치(보복)를 취할 수 있다.

82) 아세안(d), 인도(i) 공정은 EU, E-FTA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가공공정의 일부로 인정

83) 직물의 섬유에 광택을 내고 보풀의 감축을 부드럽게 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마무리 공정

84) 면사와 면직물을 가성(可性) 소다로 처리하여 실크와 같은 광택을 부여, 면의 품질을 높이는 가공법, 실크(Silk)가공이라고도 함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 섬유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으나, 절차상 부담 때문에 현재까지 실제 발동한 사례는 없다.

참고로, 섬유 긴급조치는 한미 FTA 제10장(무역구제) 및 GATT 제19조에서 규정한 긴급조치와 동시에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섬유류 생산기업 정보 제공

(섬유·의류생산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5.1 배경

그 동안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반면, 섬유수입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쟁력이 없는 섬유산업에 대해 GATT(1948)체제의 느슨함을 이용해 보호무역주의를 취해왔다. 섬유수입 선진국들은 1961~1973년까지의 장단기면직물협정, 1974~1991년까지의 다자간섬유협정(MFA)⁸⁵⁾ 대신 WTO(1995)체제 하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⁸⁶⁾에 따라 섬유류 개방 폭을 점차 늘리다가 2005년도부터 섬유분야의 교역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 기준 중국산 섬유류의 대미 시장점유율이 2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하여, 이들 상품에 대해 강력한 세이프가드 및 쿼터를 도입하자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섬유류 우회수입 적발금액의 대부분(85%)이 중국산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세관은 2004년도에 ‘섬유류 생산 검증팀(TPVT :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s)’을 신설하고, 불법 환적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다.

85)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 :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수출 개도국 간에 수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GATT체제하의 협정으로 1974년 제1기~1991년 제4기 까지 진행되다가 그 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따라 2005년도부터 섬유분야도 WTO체제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86)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섬유교역에 대한 수입규제(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섬유류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된 WTO협정의 하나이다. 제1단계에서는 WTO회원국이 1995년 1월 1일에 1990년도 총 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한 16%를, 제2단계에서는 1998년도 1월 1일을 기하여 최소 17%를, 제3단계에서는 2002년도 1월 1일을 기하여 최소 18%를 수입 자유화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나머지 모든 섬유류 품목의 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2004년 710개, 2005년 480개 외국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 행위를 한 123개 공장을 적발하고,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모두 폐쇄하였다.⁸⁷⁾

이리하여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섬유류에 대한 생산정보를 수출국에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에 체결한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싱가포르의 모든 섬유생산자(대미 수출과 무관)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생산자에 한하여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강력한 우회방지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체결한 미국-칠레 FTA(04.1), 미국-호주 FTA(05.1)에서는 선언적 규정만 도입한 것과 비교된다.⁸⁸⁾

5.2 한미 FTA 세관 협력

한미 FTA 제4장(섬유 및 의류) 제4.3조(세관 협력) 제1항에서

- (a)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 (b)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는 것
- (c)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 (d)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우회를 방지(preventing circumven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이 상호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 섬유·의류생산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협정문 제4.3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인(each person)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를 매년 미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87) 한국무역협회(2007), 한미 FTA 100% 활용하기 pp.143~146, (원저자 : KOTRA 장용훈 뉴욕무역관, 美(미)세관 원산지/의류 불법 환적 단속에 대한 대비책(2006.8))

88) 한국무역협회 전제서, pp.143~146,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 1)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경영인의 성명 및 주소
- 2) 그 인(인)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e-mail) 주소
- 3) 기업 임원의 성명과 국적 그리고 기업 내의 직위
- 4) 근로자(피고용인)의 수 및 임무
- 5)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생산능력
- 6) 상품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 7) 대략적인 주당 가동시간
- 8) 원재료(원단, 원사 또는 섬유원료) 공급자의 신원
- 9) 미국 내 거래처 성명 및 연락처

협정문상 정보의 수집·제공 주체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승계기관이며, 업계단체 등에 정보 수집을 위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⁸⁹⁾ 등록대상 사업장은 국내 1인 이상 기업 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을 실질적으로 생산한 기업으로, 최종 수출제품의 완성공정(예: 제직/편직, 봉제)을 수행한 기업과 원재료(예: 섬유, 원사) 생산기업이다. 이를 위하여 2012.12.7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을 개설하였다. 정보의 최초 제공시점은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매년 갱신하고, 제공된 정보는 미국이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⁹⁰⁾ 이러한 정보는 중소기업의 영문 작성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재 생산 기업이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하는 섬유류,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눈에 보이는 안감재료’로 사용된 원단이외의 것으로 제61류 및 제62류 의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의 수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기 1)~6)까지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89)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2항 라

90)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2항 마 및 제7.6조(비밀유지)

6.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원산지결정기준 예외물량)

6.1 개요

한미 FTA협정문 부속서 4-나에서는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⁹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해서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1부(제50류~제63류) 규칙1~3⁹²⁾을 조건으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즉 원산지 기준의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공급부족 원재료 즉,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비원산지)섬유 원료, 원사 및 원단’을 상대국 동의를 얻어 부속서 4-나-1(예외물량 목록)에 등재하고, 예외물량 목록에 등재된 ‘역외산 섬유/원사’가 역내가공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부속서 4-가 제11부 규칙1>에 따라 HS 제51류~제60류(원사, 원단) 상품에 대해서 연간 1억 SME(square meter)까지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예외물량 목록에 등재된 ‘역외산 원단’이 역내가공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부속서 4-가 제11부 규칙2 및 규칙3>에 따라 HS 제61류~제62류(의류) 상품에 대해서 연간 1억 SME(square meter)까지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외물량은 미국, 한국 모두 확보할 수 있는데, HS 제51류~제60류 및 제61류~제62류 각각에 대하여 협정 발효 후 최초 5년간 매년(in each of the first calendar years) 1억 SME(square meter) 상당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1~규칙2의 혼합물에 사용되는 원산지재료에는 최소허용기준이 허용된다.

6.2 운용 절차

수입당사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interested entity)’⁹³⁾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

91) 공급이 부족한 원재료에 대해서 당초 미국은 이를 ‘공급부족으로 촉발된 특혜관세물량 (TPL : Tariff Preference Level)’이라고 지칭하였으나, 미국 업계의 거부감으로 현재의 협정문 용어로 표현하였다. (FTA원산지해설 P.335, 2007년도 성윤갑)

92) 부속서 4-가 제11부 규칙1: ‘섬유·원사·직물’의 원산지 예외, 규칙2: ‘의류 겉감’의 원산지 예외, 규칙3: 특정 의류제품의 ‘보이는 안감’의 예외 인정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93)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라 함은 당사국, 섬유 또는 의류상품의 구매자 또는 섬유·의류상품의 공급자이다.(부속서 4가(일반주해) 제12호)

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대국에서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 즉, ‘원산지 재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실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속서 4-나-1의 예외물량 <목록>에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을 등재한다. 수입당사국은 상대 수출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목록>에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재료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만약,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人(인)이 우회수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1억 SME물량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물량의 3배까지 공제할 수 있다.⁹⁴⁾

6.3 적용기간

공급부족 원료에 대한 상호간 예외 인정은 협정 발효 후 최초 5년(the first five calendar years) 동안 원사·직물 및 의류 각각에 대하여 매년 1억 SME까지 유효하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은 발효 후 여섯 번째 연도 1월 1일(2017.1.1)에 적용이 종료된다.(부속서 4-나 제13항) 이러한 한시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로 상대국에 요청하여 부속서 4-나-1의 예외물량 <목록>에 등재한 품목은 없다.⁹⁵⁾

7. 섬유류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De minimis, Tolerance Rule)

섬유·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HS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component)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품목별 원산지기준(협정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7%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⁹⁶⁾

94) 협정 부속서 4-나 제8항

95) 우리나라는 2013년 하반기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통해서 국내 섬유생산 업체에 대해서 공급부족 물량 신청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확인된 바 없다.

8.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위원회

8.1 개요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원산지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조항을 두면, 체약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협정에서 정한 일정 원산지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동제품의 최종 공정이 역외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⁹⁷⁾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나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과 안보이익 및 미국의 상응한 이익을 인정하면서,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최초 회합을 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이상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2 지정 조건

부속서 22-나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의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등 국제규범 준수를 명시하고,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역외가공 지역의 환경, 노동과 임금에 대한 국제 규범의 준수 등을 감안하여 원산지기준을 수립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협정 가운데, 칠레를 제외한 5개 협정은 일정 조건하에 역외가공을 인정하였고, EU-터키·미국과 발효를 앞둔 호주·캐나다는 다 같이 역외가공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처럼 구체적인 설립 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 향후 미국보다는 역외가공 인정이 한층 쉬워 보인다.

96) 한미 협정문 제4.2조 제7항(최소허용수준) 및 부속서 4-가(섬유·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11부 규칙1 참조. ※비원산지 세트물품 특례규정 : 협정문 제4.2조 제8항

97) 한-싱가포르, 한-E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사실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제1절 FTA 특혜관세 활용 섬유류 수출 저조

1. 한미 섬유류 FTA 활용률 분석

먼저 이 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은 협정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현행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도표는 2012년도 기준 대미 섬유제품의 수출실적 및 FTA 활용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2.3.15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에 있어 FTA를 활용한 수출금액은 632백만불로 FTA 활용률(= FTA수출액 / (총수출액 - 무관세 및 협정제외품목 수출액))은 7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미 전체 수출 FTA 활용률 66.1%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TA 활용률이 높으면 당해 상품의 수출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높은 FTA 활용률이 반드시 수혜품목의 수출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HS 제53류 기타 식물성 섬유와 식물, 제60류 편물, 제61류 편물제 의류, 제62류 직물제 의류의 경우는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까다로운 원산지결정 충족에 따른 제품원가 상승, 개성공단 역외가공 논의 지연, 원산지 예외물량 미운용, 섬유류 생산기업 연례 정보제공 및 섬유 및 의류 제품 원산지 사후검증 강화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미 섬유류 수출금액 자체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섬유류 생산기업에 대한 연례 정보제공은 새로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 표2-20 > '산업별 FTA특혜 대미 수출 현황'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류 제품이 높은 FTA 활용률을 보이면서도 전체 수혜품목의 2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8.0%에 훨씬 못 미치는 1.7%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참고로, 무관세 및 협정 제외품목을 포함한 대미 섬유류 FTA 활용률(= FTA수출액 / 총수출액)⁹⁸)은 약 50% 수준이다.

98) 무관세 및 협정 제외품목을 포함한 활용률 : <도표> FTA 활용률 ()안 숫자

<표 4-1> 대미 섬유제품의 수출실적과 FTA 활용 현황

(단위 : US 백만달러, %)

품목	11년도 수출실적		12년도 수출실적		수출 증감률		FTA 활용률**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FTA수출	활용률
전업종	56,635.5	43,884.3	58,879.8	45,131.7	4.0	2.8	10,934.1	66.1 (18.6)
제50류	30.2	24.2	30.7	22.7	1.8	-6.2	0.4	43.3 (1.3)
제51류	1.5	1.2	1.5	1.1	2.4	-13.5	0.3	28.2 (20.0)
제52류	157.8	125.6	157.0	121.0	-0.5	-3.6	51.3	42.4 (32.7)
제53류	3.5	2.5	3.2	2.5	-8.7	-1.2	0.001	100.0 (0.0)
제54류	152.6	115.1	178.8	137.5	17.2	19.5	113.8	86.6 (63.6)
제55류	149.6	116.7	193.5	148.3	29.4	27.1	135.5	91.4 (70.0)
제56류	46.1	36.4	52.2	39.7	13.2	8.9	10.2	85.9 (19.5)
제57류	40.5	31.7	45.3	35.0	11.7	10.7	1.3	3.7 (2.9)
제58류	26.7	20.6	28.5	22.7	7.0	10.3	17.6	79.6 (61.8)
제59류	135.3	102.5	152.9	117.5	13.0	14.7	72.5	88.7 (47.4)
제60류	170.2	131.1	168.4	122.5	-1.1	-6.5	96.9	79.2 (57.5)
제61류	218.7	175.2	197.0	155.6	-9.9	-11.2	106.6	68.5 (54.1)
제62류	33.0	26.6	28.7	22.3	-13.1	-16.1	13.1	58.9 (45.6)
제63류	37.3	28.1	33.1	25.6	-11.2	-9.0	12.4	50.9 (37.5)
(섬유) 합계	1,202.9	937.4	1,270.7	974.0	5.6	3.9	632.0	72.9 (49.7)

출처 :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섬유 및 의류산업)(2013), 한국무역협회 p.24

** FTA 활용률 = FTA수출액 / (총수출액 - 무관세 및 협정 제외품목 수출액)

(원출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 섬유류 수출저조 원인 분석

이와 같이 섬유류 수출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자동차, 전자, 화학제품 등 고부가가치 부문 위주로 재편되고,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EU 등 주요 섬유류 소비 선진국들의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과 수출자의무사항 강조, 활용 가능한 각종 제도의 미운용,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공정에서부터 출발하는 화학섬유 계통은 연관 산업⁹⁹⁾이 잘 발달되어 있어 비교적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운 구조이나, 나머지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역내산 원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미국, EU 등 지역의 섬유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직물제 로프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한 결과 종전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던 화섬 원사를 FTA발효 이후에는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원가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 '원산지기준'은 까다로운 NAFTA모형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대신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한미 FTA 협정문 제4장에 나와 있는 섬유류 생산기업 연례 정보제공 및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예외물량) 운용방식, 세관 협력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고, 미-싱 섬유 및 의류 분야 협정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입장이 다르다. 싱가포르는 섬유 및 의류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섬유류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수출 8위, 수입 7위) 내에 있고, 전체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이 8.2%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다.

한편, 미국 HS 품목분류 8단위 기준(US HTS 8, 관세부과 기준)으로 대미 섬유류 수출 상위 20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스웨터 32.0%부터 합성스테이플 섬유 4.3% 사이에 대부분의 관세율이 분포되어 있다. 섬유류의 경우 관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높은 관세율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금액기준 FTA활용률은 60.7%에 불과하다.

99) HS 제27류 정유 → 제39류 수지 → 제54~제60류 인조섬유·원사·직물 및 이들 제품

<표 4-2> 대미 수출액 상위 20개 섬유 제품과 활용 비중

(단위 : 백만불, %)

순위	H S	품 명	FTA 수출액	총 수출액	활용 비중	기준 관세율
1	55032000	합성스테이플섬유	123.2	170.7	72.2	4.3
2	59022000	폴리에스터 강력사 타이어 코드지	41.6	54.9	75.8	5.8
3	52085230	날염된 평직물	40.2	113.1	35.5	6.0
4	61159590	기타 면제 양말	27.7	53.2	52.0	13.5
5	60041000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	21.3	37.2	57.2	12.3
6	54022030	폴리에스터 강력 단사	19.6	26.8	72.9	8.8
7	54076199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터 필라 멘트가 총중량 85%이상의 직물	19.3	36.1	53.5	14.9
8	60063200	염색된 메리야스 또는 손뜨개 편물	18.9	32.6	58.0	10.0
9	61159690	기타의 합성제의 양말	15.7	25.2	62.5	14.6
10	61161055	장갑류	15.5	25.7	60.2	13.2
11	54024790	기타 폴리에스테르 사	14.9	22.0	67.7	8.0
12	60053100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경편직 직물류	14.5	14.5	100	10.0
13	60063400	염색한 경편직 직물류	12.1	25.2	48.4	10.0
14	60053200	스웨터	11.9	24.8	48.2	10.0
15	61103030	염색한 경편직 직물류	10.0	13.6	73.2	32.0
16	59032025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	8.3	15.0	55.0	7.5
17	58063220	세폭직물	8.0	11.6	69.2	6.2
18	54024590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의 기타사	7.3	10.9	67.5	8.0
19	61161065	장갑류	6.3	8.5	74.6	7.0
20	62143000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 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1	7.2	84.6	5.3
20개 품목 합계			442.4	728.8	60.7	

출처 :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섬유 및 의류산업)(2013), 한국무역협회 p.27, 표 일부 수정
(원출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 FTA 특혜수출 향상 방안

3.1 산업용 섬유수출 비중 확대

2014년도 들어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불황으로 국내 원사업체에서부터 중소 제직과 염색업체, 그리고, 유명 브랜드 패션업체까지 대부분의 섬유관련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국 섬유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산업용 섬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섬유업체는 21세기 들어 거대한 내수시장의 이점을 가진 중국섬유의 급부상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섬유업체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산업용 섬유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섬유패션 강국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섬유산업 불황 탈출구로 산업용 섬유분야에 적극 뛰어들어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새로운 섬유산업 중흥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¹⁰⁰⁾

일반적으로 산업용 섬유는 FTA 협정을 불문하고 다른 직물이나 의류보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훨씬 용이하다. 아래 표는 현재까지 산업용 섬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HS 제56류(부직포)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이다. 이들 제품은 HS 제39류 역외산 수지(resin)를 원료로 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섬유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특히, HS 제56류의 수출이 순조로운 것은 제2장 한미 FTA 발효 2년간 교역성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표 4-3> 산업용 부직포의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HS 세번부호	품 명	원산지결정기준
5603.11	부 직 포 (침 투 · 도 포 · 피 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601호 내지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류~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오늘날 산업용 섬유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수송용을 비롯한 건설용, 토목용, 농업용, 부두·항만, 해양산업, 의료용, 항공우주, 친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100) <http://www.okfashion.co.kr>(Textile Life(2014.9.17(수)) 제611호, p.2, p.16)

넓히고 있으며, 아직도 70%가 미개척 분야로 개발 여지가 남아 있어 적용 분야와 시장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발전될지 지켜볼 일이다.¹⁰¹⁾

특히, 산업용 섬유산업의 절대 강자인 독일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인 산업용 섬유생산에 중점 투자해 산업용 섬유가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산업용 섬유산업을 주도하고 있어 우리나라 섬유업체가 지향해 나가야할 국가 모델이 되고 있다.¹⁰²⁾ 국내 주요 산업용 섬유업체로는 도레이케미칼(일본 기업), SK케미칼, 휴비스, 효성, 태광산업 등이 있다.

<표 4-4> 주요 산업용 섬유의 HS분류

용도	HS 코드
탈지면 · 거즈 · 붕대	제3005호
담배 필터	제5601호
건축용 단열재	제5602호
자동차, 항공기, 선박 내장재	제5603호
어망(fish net)	제5608호
방충망	제5608호
타이어코드 직물(tyre code fabrics)	제5902호
차양 · 텐트 · 돛	제6306호

아울러 우리나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기능성 소재 개발과 함께 제작·편직·염색공정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국내 직물 및 의류 생산업체와 엔터테인먼트사가 공동으로 패션 브랜드를 론칭(launching)하여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스트리트 문화를 향유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한류(韓流) 바람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은 미국·유럽 등 고가 브랜드 시장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저가 의류의 틈새시장을 활용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로 보여 진다.

101) <http://www.okfashion.co.kr>(Textile Life(2014.9.17(수)) 제611호, p.2, p.16)

102) <http://www.okfashion.co.kr>(Textile Life(2014.9.17(수)) 제611호, p.2, p.16)

3.2 공정누적 활용

현재의 협정 틀 안에서 다소나마 섬유류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료누적, 공정누적 및 미소기준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누적(Accumulation)은 한미 FTA 협정문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료누적은 역내산 원자재, 즉 미국산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면 바로 해결되지만 제품의 원가상승에 대한 부담, 소위 준수비용(compliance cost) 부담이 있다. 한미 FTA에서 상대국 공정누적도 인정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임금수준이 높은데다 장거리 운송비, 적기공급(JIT) 문제점 등으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 공정누적은 방적공정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높은 인건비와 낮은 부가가치 때문에 국내에서 방적, 방직 등 의류 전 단계 공정을 수행할 하위 협력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누적을 활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2.1 국내제조확인서 역할

국내제조확인서¹⁰³⁾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 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하는 경우 특정 물품이 역내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제조 가공되는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특정 공정을 당해 제품의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번변경기준에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 진다.

103) FTA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자율증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3.2.2 국내제조확인서 활용 예시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한미 FTA에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면사(HS5205)는 무조건 역내산(미국 또는 한국) 원면(섬유)을 사용해야 원산지 제품 지위를 획득하고 (소위 fiber forward), 국내에서 제조하는 면직물(HS5208)은 역내산 면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든지¹⁰⁴⁾ 역외산 섬유(원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前 단계 면사(yarn)를 제조하는 방적과정, 즉 실을 뽑는 공정부터 역내에서 계속 이루어져야(yarn forward)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표 4-5>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공정	브라질산 원면 (HS 5201)	한국에서 → A사 면사제조 (HS 5205)	한국에서 →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기준		CC*	CTH**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 ¹⁰⁵⁾)	
①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산	브라질산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②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원산지 충족(CTH기준, 5201→5208) B업체가 A업체 생산 공정을 누적		특혜수출 可能

* 2단위 세 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됨
 ① A사가 만든 면사 : 브라질산 (5201→5205로 2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B사가 만든 면직물 : 브라질산 (5205→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으나 5205호에서의 변경이므로 불인정)
 ② A,B사가 만든 면직물 : 한국산 (5201→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고 5205호에서의 변경이 아님)

출처 : 한미FTA 발효대비 ‘한미FTA 관세행정 주요내용’ 지침(2012), p.47, 관세청

즉, 한미 FTA 협정상 면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4단위 변경), 다만

104) 한미 FTA에서 이를 소위 ‘yarn forward’기준이라고 한다. ‘yarn forward’란 면사(실) 생산단계부터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105) ‘HS 5205(면사)에서의 변경은 제외’라는 것은 HS 5205(면사)는 원산지 제품이어야 하고, 5205호 이외 다른 4단위 호에서 세번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5205호로부터의 변경을 제외한다)”인데, ‘국내제조확인서’ 발급 유통으로 누적조항을 활용하게 되면, 생산 직물(HS 5208)은 직전 단계인 비원산지 원사(면사, HS 5205)로부터 변경이 아닌 前前(전전) 단계 비원산지 섬유(HS 5201)에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5205호로부터의 변경을 제외 한다’는 의미는 HS 제5205호 이외 다른 4단위 호에서부터 변경되어야 하고, HS 제5205호는 반드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3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활용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어떤 상품에 사용된 원자재가 품목별 원산지기준(협정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7%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¹⁰⁶⁾

예를 들면, 한미 FTA에 있어 HS 6106.10 여성용 면제 셔츠를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 몸통 부분을 구성하는 면혼방 직물이 역내산 면사(5205) 60%, 양모사(5106) 35% 및 중국산 레이온사(5403) 5%로 구성되어 있다면, 의류 전체 중량의 5%에 불과한 레이온사의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에도 셔츠 몸통부분의 면혼방 직물이 협정 부속서 4-가에서 정한 HS 6106.10 품목별 원산지기준¹⁰⁷⁾을 충족하게 되어 해당 제품은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미국은 의류부문에서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 부분(Major Parts) 즉,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만 고려하고, 칼라·소매·주머니·안감·심·장식품·부속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¹⁰⁸⁾

106) 한미 협정문 제4.2조 제7항(최소허용수준) 및 부속서 4-가(섬유·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11부 규칙1 참조

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104.61호 내지 제6104.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108) 19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 연방규정) 102.21조 참조

제2절 섬유류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문제점

1. 생산기업 정보제공 검토

현재까지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 및 의류 생산기업(원재료 공급 및 하청 임가공 포함)에 대한 정보제공은 제3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불법 우회수출 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섬유제품에 대한 신뢰 확보로 미국 내 신속통관과 대미 섬유류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순기능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나,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전체 대미 수출금액의 2%수준)이 극히 낮은 대미 섬유류 수출을 위하여 자국의 산업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섬유류 생산기업 정보제공은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가운데, 미국-싱가포르 FTA협정에 이어 대한민국-미국 FTA가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통틀어 유일하다.

2. 유사사례 연구

2.1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이스라엘(1985.8) FTA 이후, NAFTA(1994.1), 칠레(2004.1), 호주(2005.1), 페루(2009.2)와 순차적으로 FTA 협정을 발효시켰고, 우리나라와는 2012.3.15부터 협정을 발효시켰다. 미국이 체결한 FTA협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6>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

체결 국가	발효 연도	체결 국가	발효 연도
이스라엘	1985.8	바레인	2006.8
NAFTA	1994.1	CAFTA-DR	2006.3
요르단	2001.12	오만	2009.1
싱가포르	2004.1	페루	2009.2
칠레	2004.1	한국	2012.3
호주	2005.1	콜롬비아	2012.3
모로코	2006.1	TPP	2014 협상 중

출처 : 기획재정부(2012), FTA의 이해, p.109 연구자 재구성

2.2 미국-싱가포르 FTA 협정문 검토

싱가포르는 미국-싱가포르 FTA 협정 제5.6조(정보공유)에 의하여 자국의 섬유 생산관련 정보를 매 분기마다 미국에 제공해야 하고, 등록된 생산자에 한하여 대미 수출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에 우리나라 섬유 생산기업 정보제공과 유사한 조항을 둔 것은 중국 등 불법 환적 우려 국가로부터 반입된 섬유류가 자유 무역국가인 싱가포르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미국 측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섬유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세관협력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싱가포르 FTA 협정 제5.6조(정보공유) (a)~(i)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싱가포르는 이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미국 측에 등록업체의 명단을 제공하고, 매 분기마다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 미국 측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 정보에는 업체의 이름,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싱가포르 소유자인지 여부, 소유자 이름, 종업원 수·임금·근로시간 및 최소 고용연령, 생산기계의 타입과 대수, 기업의 생산능력, 미국 내 수입자의 이름 등이다.

3. 대응방안

미국은 세계 섬유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이나 인도산 의류제품 등이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되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우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섬유류 수출국이나 물류 HUB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강력한 불법 환적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섬유·의류 종사자 정보제공(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each person engaged in the production textile & apparel goods, 섬유 생산기업 정보제공)은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이 문제는 섬유류 현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하기로 합의한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extile and Apparel Trade Matters)’ 통하여 정보제공 주기를 늘리거나(3~5년) 이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의 0.2%에 그치고, 대미

수출금액의 2%에 불과한 대미 섬유류 수출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친 세관협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¹⁰⁹⁾

제3절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문제

1. 역외가공 실효성 검토

한반도 역외가공 허용 논의는 발효 1주년이 되는 날(2013.3.15)에 처음 회합하고,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역외가공은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9개 FTA 협정가운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한-EU,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의 경우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를 한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지만, 미국처럼 설치 기준과 발효 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지는 않다. 몇 가지 문제점은

첫째, 설치 기준이다.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 지역의 환경, 노동기준 및 임금관행과 경영관행, 기타 여건과 국제규범을 감안해서 지정하고, 역외가공물품 원산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발효 기준이다.

협정 부속서 22-나 제5항¹¹⁰⁾에 의하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북한지역에 역외가공지역 지정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이고, 이들 지역 생산품이 한미 FTA협정상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양국 의회 비준)을 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¹¹¹⁾ 이 보다는 고위급 회의나 위원회 합의문 형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109) 본인 논문 <표 2-21> 참조

110)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

111) 당초 한국 정부는 FTA타결 이후 협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받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 곧바로 원산지 인정을 받아 미국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반대 때문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2. 남북교역 중단 이전 교역실태 분석

2010.5.24 통일부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휴대품 및 북한 내 남한국민 생활용품, 남북회담 등 관련 용품,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개성공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반출입 물품을 통일부장관 승인대상으로 묶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 재개되고 한미 간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문제가 논의된다면, 열악한 대미 섬유류 수출환경 타개를 위하여 개성공단 제조·가공·물품에 대해서는 재료비, 가공비 등 일정기준 이하의 비원산지 비율(ex, 다른 협정 40% 이하)을 조건으로 대미 수출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교역 중단 이전 섬유류 위탁가공 비중이 단연 많았던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아세안 저임금국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봉제 기술로 섬유제품 생산에 가장 강점을 지닌 지역으로 생각된다.

<표 4-7> 남북교역 중단 이전 교역실태

(단위 : 백만불)

구 분	'08년			'09년			'10.5월		
	반출	반입	합계	반출	반입	합계	반출	반입	합계
개성공단	535	301	836	533	416	949	347	268	615
비율(%)	60	32	46	72	45	57	83	55	68
일반교역	350	637	987	206	517	723	72	219	291
비율(%)	40	68	54	28	55	43	17	45	32
전체교역	885	938	1,823	739	933	1,672	419	487	906

출처 : 관세청 업무자료(원출처 : 통일부 자료)

참고로, 2009년도 기준으로 남북 일반교역은 섬유·의류(221백만 불), 수산물(137백만 불), 무연탄(31백만 불), 농산물(29백만 불) 순으로 반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섬유류 역외가공 금액이 가장 높아 섬유류 역외가공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응방안

한반도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허용과 관련하여 협정문에서는 발효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 고위급 회의나 위원회 의제 채택을 통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외 정책적 해결방법으로는 남북 간 평화진전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노동력과 자연자원의 이점을 가진 북한 개성공단 등 유망 지역에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이들 국가의 요청으로 FTA협정에서 정한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논의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고, 2010.5.24 남북교역 중단 이후 통일부 승인 없이는 물자교류가 불가능한 국내 사정이 해소된다고 해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 때문에 북한의 핵과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워 보인다.

제4절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문제

1. 적용 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

1.1 적용방법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Fibers, Yarns, and Fabrics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¹¹²⁾ 즉, 역내 공급부족(TPL, triggered short supply) 섬유재료에 대한 예외물량 확보는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대국에서 원산지 재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실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속서 4-나-1의 예외물량 <목록>에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을 등재하면, HS 제50류~제60류 원사·원단 및 HS 제61류~제62류 의류 생산에 매년 각각 1억 SME(우리나라 대미 섬유류 수출물량의 약 10%로 추정) 상당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12) '국내 공급부족 원료' 의미의 한미 FTA 협정문상 용어로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2 절차상의 문제점

역내 공급부족(TPL, triggered short supply) 섬유 재료에 대한 예외물량(Delegation) 즉,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물량(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의 역외조달은 발효 5년차까지만 인정되지만, 아직 양국 간에 협의를 거쳐 예외물량 목록에 등재된 것은 없다. 문제는 수입국에서 원산지 재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실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FTA 발효 이후에는 각국이 처한 경제사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상대가 미국처럼 경제대국인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한 해결은 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예외물량 운용은 이대로 가면 협상용 카드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FTA 협상과정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협상 마무리를 위하여 유보조항을 둘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이런 조항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한-미, 한-캐나다 등 FTA협정상 몇 가지 농수산물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 Tariff-Rate Quotas, 저율할당관세) 품목 방식으로 운용하거나, 관세화를 통한 개방 또는 한-EU FTA 섬유류 예외물량처럼 수입국에서 연간 최대 수입량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급부족 원료 접수사례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3년도 하반기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통해 관련 업체로부터 국내 공급이 부족한 섬유·원사·직물(예외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현재 그 경과를 알지 못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역내조달이 어려운 섬유·원사·원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 당사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¹¹³⁾을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원사·직물 및 의류 각각에 대하여 일정물량(연간 1억 평방미터)까지 원산지결정기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미FTA협정문 <부속서 4-나>를 활용하여 수출한 사례는 없다.

113) 이를 '원산지결정기준 예외물량' 또는 '공급부족 재료에 대한 역외조달 허용'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3. 대응방안

한미 양국이 국내 공급이 부족한 HS 제50류~제60류까지의 원사·직물 및 HS 제61류~제62류까지의 의류 각각에 대하여 연간 1억 SME(평방미터)를 한도로 발효 후 최초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예외물량은 수입 당사국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실체(구매자, 공급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물량 목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¹⁴⁾ 이 제도 역시 FTA 발효 이후에는 당사국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장 활용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까다로운 섬유류 원산지기준과 원산지 사후검증 강화, 섬유류 생산기업 정보제공 및 개성공단 역외가공 추가논의 지연 등으로 대미 섬유류 수출이 저조한 이유를 들어 지금이라도 섬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협상에 입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FTA협정문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의 제11부 규칙1~규칙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물량(부속서 4-나-1 목록)으로 지정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특혜수출에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¹⁵⁾

114) 자세한 절차는 한미 FTA 부속서 4-나 제5호~제6호에 규정하고 있다. 예외물량 목록에 추가한 품목은 수입 당사국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목록에서 삭제할 수 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원산지 예외물량에 대해서 특혜관세 공여를 보장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싱가포르 FTA협정문 제2.12조¹⁾에서도 비원산지 면(cotton)과 인조섬유를 사용한 HS 제61류, 제62류 의류제품에 대한 예외물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리 연차별 예외물량을 확정해놓았기 때문에 추가 협의가 필요 없고, 싱가포르에서 재단·봉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발효 1차 연도 25,000,000SME를 시작으로 발효 8차 연도까지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다만, 관세율은 발효일로부터 5년간 균등 철폐) 이는 우리나라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단된다.

115) 연구자 논문 p.62~63참조

제5장 결론

제1절 시사점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까지 한미 FTA 섬유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7년도 이후 발행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서 하나 같이 우리나라 섬유류를 ‘수혜 품목’으로 분류하고, 높은 관세율의 철폐로 인한 기대감으로 한미 FTA 발효 즉시 섬유류 수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한미 FTA를 적용받는 우리나라 섬유류 제품은 더 이상 수혜품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계수치로 입증하였다. 물론 발효 전 후 2년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협정문 제4장에 나와 있는 섬유 및 의류 분야 협정문 내용, 원산지 검증 절차, 각종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방적인 섬유 생산기업의 정보제공 문제, 협정 발효 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한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추가논의 지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원산지 예외물량 미활용 문제 등 협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협정문 틀 안에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한미 FTA 발효 당시 쇠고기 도축기준(slaughtering rule)¹¹⁶⁾ 수용이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¹¹⁷⁾를 대표적인 협상 잘 못 사례로 들었지만, 섬유류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에 있어 한미 FTA 섬유류 생산기업 정보제공과 같은 불합리한 협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역내 공급 부족 섬유류 소재의 역외조달과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문제 사후 논의처럼 협상 기술상 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FTA 교역성과는 자국의 민감 산업에 대한 양허제한 폭 설정과 수출품의 원자재 조달 및 가공생산 능력을 감안한 원산지결정기준 마련 여하에 달려 있다. FTA협상이 대외 포괄적인 정책행위 이기는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산업별·품목별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6) 도축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상으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Chapter)이다.
ex. HS0102 소(牛) → HS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

117)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 :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 분쟁해결기구(ICSID)의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6년 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합법적인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은 대체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3.15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품 교역만 가지고 한미 FTA의 전반적 성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른 개방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품교역 분야 중에서도 섬유류 분야의 교역 성과와 문제점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한EU FTA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년 상품교역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을 급격히 감소시켜 현재는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한칠레 FTA 역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FTA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국 간에 산업별·품목별로 ‘양보와 실리를 축으로 하는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 FTA 섬유류 협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정보를 일방적, 비대칭적으로 미국 정부에 제공하고, 협정문에 근거하여 섬유류 특혜수출에 활용 가능한 각종 제도가 발효 3년차까지 공식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효과는 장기적이고 동태적 관점(long term and dynamic effects)에서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결국 FTA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2. 향후 과제

한미 FTA 협정의 섬유·의류 부분은 yarn forward로 대표되는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협정문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근거한 국내 섬유생산기업에 대한 연례 정보제공, 통관 시 수입자의 제조자식별코드(MID) 제출,

검증 시 수출자의 제조자진술서(M/A) 제출로 미국 측에서 보면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상당히 용이해졌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류 수출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협정문상의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¹¹⁸⁾를 통한 현안 타결이다. 우리나라는 섬유류 수출품목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생산시설 정보제공 협력 의무를 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비슷한 조항은 없다. 양 당사국 대표가 섬유류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정에서 규정한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¹¹⁹⁾를 통하여 대미 섬유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전 있는 협상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원산지 예외물량 확보 및 한반도(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항공기, 산업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보다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향후 체결될 FTA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국과의 FTA 중복 체결로 인한 문제 인식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통합형 Mega FTA는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TPP, 중국이 주도하는 RCEP,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TTIP, APEC 21개국 중심으로 논의되는 FTAAP 등이 있다. 이들 협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경우 특정국과의 FTA 중복체결(2~4개)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FTA 협상 단계부터 국가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무역계약 단계에서 동일한 국가로 수출되는 동일품목에 대해서 상대국 수입자가 선택하는 협정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업체 측의 부담으로 FTA 활용저하가 우려된다. 또, 동일한 수출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수입자별·협정별로 원산지관리를 따로 해야 하는 부담도 예상된다.

결국, 세계 각국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역무역주의를 확대해 나간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호간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개념 자체가 무색해지고, 대신 원산지관리 비용만 증가할 것이다.¹²⁰⁾

118) 한미FTA 협정문 제4.4조에서 규정

119) 한미FTA 협정문 제4.4조에서 규정

120) NAFTA협정에서는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산정할 때 선정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셋째, TPP 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수출 마케팅 전략수립이다. FTA는 본래 협정 당사국끼리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오늘날 세계적 다국적 기업은 물류 SCM(supply chain management) 달성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고, 국가 간 상호 투자보호협정(BITs)이 체결되어 있어 특정국가와의 FTA협정이 더 이상 협정 당사국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협정¹²¹⁾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TPP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의 역내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 멕시코 등 국가에 진출하거나 한미 FTA보다 완화된 섬유류 원산지기준이 도입될 경우 이를 활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 섬유·염색업체들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발효 이후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현재까지 TPP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과 비슷하고, 협상타결 후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및 중국과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협정을 묶으면 환태평양 국가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는 미국, 수출경합도지수(ESI ; export similarity index)가 높은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TPP협상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하게 된다면, 한미 FTA에서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불리하게 협상이 진행된 섬유류 수출, 쇠고기 수입,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list)에 포함된 핵심 원부자재만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소위 트레이스 방식(Trace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항공기, 자동차, 첨단 산업기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사례로 판단된다.

12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Pacific 4) 체제로 2006년에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미국, 호주, 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그 후 2012년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2013년 일본이 합류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관세청(2014), “2014 INTERNATIONAL ORIGIN CONFERENCE”, COEX, SEOUL
- 관세청(201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관세관련)
- 관세청(2011), 한미 FTA 발효 대비 ‘한미 FTA 관세행정 주요내용’
-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2014), “FTA TRADE REPORT”, 4월호~10월호
- 관세청 보도자료(2013~2014)
- 권순국(2014), “글로벌 가치사슬(GVC'S) 구조 측면에서 TPP의 필요성과 활용 과제”
관세학회지(제15권 제2호)
- 김용태·정재완(2013),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 김진섭·김중근(2013), “관세사의 FTA 컨설팅 업무 활성화 방안”, 관세학회지
- 박철구·최장우(2013),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 성운갑(2007), “FTA 원산지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심갑영(2012), “우리나라 對美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고찰”,
월간 관세
- 이명구(2013), “FTA 비즈니스 모델 사례 활용을 통한 미래성장 전략”, 한국관세사회
- 이영달(2014),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 이호준(2013),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성균(2013),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FTA활용에 대비한 국제원산지 검증방안”,
한국관세포럼(제45차)
- 정원교(2007), “FTA 원산지기준의 과급영향 분석”, 국내 학술지
- 조정란 外(2012), “FTA의 이해”, 기획재정부
- 한국무역협회(2007), “한미 FTA 100% 활용하기”
- 한국무역협회(2014), “Trade Focus”, Vol.13 NO.12
- 한국무역협회·관세청(2013), “한미 FTA 검증대응 전략”(섬유 및 의류산업)
- 한국섬유개발원&경북대학교(2007), “섬유·의류 원산지 확인 및 심사관리 적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2), “섬유패션산업의 FTA이해와 활용”, FTA 설명회 자료

2. 국외문헌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3. 인터넷 웹사이트

국제원산지정보원(KIOI)

<http://edu.origin.or.kr/>

대한민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수출입무역통계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statsIndex.StatsIndexApp&bid=PA012DM&npp=4&len=18>

대한민국 관세청 FTA PORTAL(Yes FTA)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대한민국 법제처(MOLEG)

<http://www.moleg.go.kr/main.html>

WTO 사이트

<http://www.wto.org/>

미국 관세청(U.S. CBP)

<http://rulings.cbp.gov/>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http://www.usitc.gov/>

패션저널(Fashion Journal) & Textile Life

<http://okfashion.co.kr/detail.php?number=30233&thread=81r02>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http://www.kofoti.or.kr/OpBoard/View.asp?Code=TREND&Uid=921>

한국화섬협회(KCFA)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statsIndex.StatsIndexApp&bid=PA012DM&npp=4&len=18>